

#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 5. 18. ~ 5. 29. (10일) \* 사전감사 : 5. 11. ~ 5. 13.(3일)
- 감사반 : 감사팀장 외 5명
- 감사범위 : 2016년 9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

## 2. 감사결과

### ○ 처분총괄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천원)				신분상조치		
	계	시정	주의	개선권고	현지조치	계	추징	회수	환부	징계	훈계	기관경고
합계	28	9	16	2	1	25,308	-	25,308	-	-	-	-

### ○ 본처분요구 목록

연번	분야	제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천원)	신분상	
1	건설분야	상수도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등 현장 관리 부적정	주의			○○○
2	건설분야	도로굴착 준공신고 등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
3	건설분야	도로 2차 복구공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
4	계약분야	상수도 건설사업 일상·계약심사 행정절차 미 이행	주의			○○○
5	건설분야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시정·주의	25,192		○○○
6	전기,통신	소블록유량계실 전기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7	전기,통신	전기안전관리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권고			○○○
8	공유재산	청사관리 용역 등 관리감독 소홀	시정·주의			○○○
9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0	공유재산	상수도 자재창고 및 재고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			◇◇◇
11	일반행정	기록물 관리(용역성과품 등록) 소홀	시정·주의			◇◇◇
12	유수율제고	유수율 제고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
13	유수율제고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에 관한 사항	권고·시정			◇◇◇
14	수질·환경	상수도공사 통수 전 수질검사실시 관리 소홀	주의			◆◆◆
15	수도미터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업무 소홀	시정·주의			◆◆◆
16	일반행정	민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17	일반행정	당직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주의			☆☆☆
18	복무관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시정·주의	116		☆☆☆
19	예산회계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주의			☆☆☆
20	예산회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에 관한 사항	주의			☆☆☆

○ **현지처분 목록**

연번	분 야	제 목	처분내역			감사자
			행정상	재정상 (천원)	신분상	
1	수질·환경	소규모급수시설(세어도) 관리에 관한 사항	주의			◆◆◆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건설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등 현장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추진함에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총 52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기관명	총계	1억원이상 ~ 2억원미만					2억원이상					비고
		건수	자격증	건설자격			건수	자격증	건설자격			
				초급	중급	고급 이상			초급	중급	고급 이상	
서부수도사업소	52	27	5	19	1	2	25	3	15	3	4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세부내용 별표 1 참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5-4-가(공사현장대리인)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자의 배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자를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는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이어야 하며,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가. 동일한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군을 달리하는 인접한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발주자가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④건설업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00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같은 법 제81조(시정명령 등)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자가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7조(벌칙)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경력사항 등 자격요건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 안전관리는 물론 건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하여 시공 또는 준공한 사업중 도금액 기준 1억원 이상 건설사업 총 52건을 표본 조사한 결과 40건(전체 대비 76.9%)의 건설기술자는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표 1】 같이 ①‘2017년 서구1구역 ○○○○○○공사(장기계속계약)’ 등 9건의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해서 착공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초급기술자 또는 배관공 등의 경우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 필히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직무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경력증명서를 미 제출함으로 자격조건을 미 충족한 바 당시 계약업체로 하여금 입증자료 요청 또는 적정 건설기술자 변경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②‘000.○○○블록 석남동일원 노후관 교체공사’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자료를 보면 직무경력 3년에 미달<sup>1)</sup>(총 659일 미달)됨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자를 변경 적정한 자를 임명하고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미 교체한 사실이 확인됨.

【표 1】 건설기술자 배치 자격(경력)미달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공사명	계약 현황	관련서류 점검결과	비
----	-----	-------	-----------	---

1) 직무경력 3년(1095일) : 1095일 - 436일 = 659일 미달

		계약일	공사기간	도금액	도급사	제출서류	소명결과	고
<b>총계 10건</b>								
1	2017년 ○○○○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계약)	17.01.03	17.01.05 ~ 17.12.15	252,049	●●● 건설(주)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2	○○○○ 가좌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7.03.27	17.04.05 ~ 17.06.29	270,016	(주)●● 산업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3	○○○○ 가정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7.03.28	17.04.03 ~ 17.06.30	140,195	(주)●● 토건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폐업 (미확인)	
4	2018년 ○○○○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계약)	18.02.22	18.02.22 ~ 18.12.19	226,115	(주)●● ●●●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5	○○○○ 석남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8.05.10	18.05.18 ~ 18.06.28	106,749	●●● (주)	경력미달 (미달일수:659일 1,095일-436일)	경력충족	
6	2019년 ○○○○ 긴급누수복구공사 (장기계속계약)	19.02.22	19.03.04 ~ 19.12.20	244,320	(주)●● 개발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7	○○○○백석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9.04.29	19.04.30 ~ 19.09.16	152,349	(주)●● 건설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8	2017년 ○○○○ 개보수공사(연간계약)	16.12.29	17.01.01 ~ 17.12.22	174,605	●●● 건설(주)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9	2017년 ○○○○ 개보수공사(연간계약)	16.12.30	17.01.01 ~ 17.11.14	173,912	●●● 개발(주)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10	○○○○ 검암동 ◇◇◇일원 불량수도관 정비공사	19.10.14	19.10.18 ~ 19.12.13	126,480	●●● 토건(주)	0 경력미달 -경력증명서 미제출	경력충족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또한 【표 2】 같이 ③‘2018년 ○○○○ 긴급누수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 등 2건의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착공 시 제출된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자료를 보면 경력증명서상 현재 재직 업체 확인이 불가하여 필히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정성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며, 감사기간내 계약업체 등록 불일치 건설사 2개사에 대해 소명 등 의견조회(조회 요청 : 2020.5.26.) 결과<sup>2)</sup> ‘2018년 ○○○○ 긴급누수 복구공사(장기계속계약) 계약업체인 ◇◇건설(주)의 경우 소명을 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또한 ‘2019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의 경우 감사기간내 동 사례에 대해 계약업체로부터 제출받은 경력증명서를 보면 공사기간내(2019.1.2. ~ 2019.12.20.) 3개 타 시공사에 있던 것<sup>3)</sup>으로 확인되는 등 총 12건(전체 공사 대비 23.1%)의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기술자

2) 의견조회 요청 : 2020.5.26

- 제출기한 : 2020.5.27.한

3) 건설기술자 경력 현황 : 3개 업체

- (주)●●●개발 : 2018.4.11. ~ 2019.5.9.)

- (주)●●●●●●●● : 2019.5.10. ~ 2019.11.30.)

- (주)●●●●●●●● : 2019.12.1. ~ 2020.5.18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자를 배치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등 건설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업체 등록 현황

(단위: 천원)

연번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업체		경력조회 관련			비고	
					업체명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상	점검결과		소명결과
						자격등급	성명				
<b>총 2건</b>											
1	2018년 ◇◇◇ 긴급누수 복구공사 (장기계속계약)	226,100	18.02.22	18.02.22 ~ 18.12.19	◇◇ 건설(주)	토목 초급	○○○	-발급일: 2018.02.19. -기록현황: (주)◇◇◇ 17.12 ~ 현재 근무중	업체 미등록	미 제출	
2	2019년 ◇◇◇ 신설급수 공사(연간계약)	246,160	18.12.27	19.01.02 ~ 19.12.20	◇◇◇ 건설(주)	토목 초급	○○○	-발급일: 2018.12.18. -기록현황: ◇◇◇(주) 16.11.1 ~ 18.4.10(최종)	업체 미등록	3개사 근무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굴착 준공신고 등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6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등 15건의 경우 법정도로에 설치하는 상수도 관로공사로 관계기관에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통해 건설공사를 추진 또는 준공한 사실이 있다.

(단위 : m)

연번	공사명	위치현황		계약현황					도로굴착 허가 관련				비고
		지번	법정선현황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도급액	계약자	착공신고		준공신고		
									신고	미신고	신고	미신고	
<b>총 계</b>		<b>15건</b>							<b>120</b>	<b>158</b>	<b>90 (23차리중 포함)</b>	<b>188</b>	
<b>소계</b>	<b>2016년</b>	<b>3건</b>							<b>-</b>	<b>37</b>	<b>-</b>	<b>37</b>	
1	2016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가좌동 585-14 등 (6개소)	구도	16.1.5	16.1.5	16.11.14	173,497	㈜○○○/㈜○○○	-	6	-	6	
2	2016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마전동 1060-8 등 (22개소)	구도	16.1.5	16.1.5	16.11.3	176,396	㈜○○○ 건설/㈜○○○	-	22	-	22	
3	2016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검암동 622-2 등 (9개소)	구도	16.1.1	16.1.4	16.12.26	156,170	㈜○○○ / (주)○○○ 건설	-	9	-	9	
<b>소계</b>	<b>2017년</b>	<b>5건</b>							<b>31</b>	<b>96</b>	<b>11</b>	<b>116</b>	
1	2017년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석남동 223-280 등 (50개소)	구도	16.12.29	17.1.2	17.12.18	219,220	○○○ 건설(주)	-	50	-	50	
2	2017년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왕길동 669-1 등 (46개소)	구도	16.12.30	17.1.2	17.12.14	220,450	㈜○○○ 건설	31	15	11	35	
3	2017년도 ●●●●●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경서동 743-2 등 (29개소)	구도	17.1.5	17.1.6	17.12.21	217,807	○○○ 건설(주)	-	29	-	29	
4	2017년 ●●●●●	검암동	구도	16.1.1	17.1.1	17.1.1	173,911	○○○개발	-	1	-	1	

	개보수공사(연간 계약)	674-14 (1개소)		12.30	1.1	11.14		(주)					
5	2017년 2018년 개보수공사(연간 계약)	금곡동 336-6 (1개소)	구도	16.12.29	17.1.1	17.12.22	174,605	◇◇◇건설 (주)	-	1	-	1	
<b>소계</b>	<b>2018년</b>	<b>3건</b>							<b>-</b>	<b>15</b>	<b>-</b>	<b>15</b>	
1	2018년도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원창동 393-143 등 (12개소)	구도	17.12.29	18.1.2	18.10.5	221,631	㈜◇◇◇ 건설	-	12	-	12	
2	2018년 개보수공사(연간 계약)	석남동 508-2,3 등 (2개소)	구도	17.12.27	18.1.2	18.11.16	174,266	◇◇◇ (주)	-	2	-	2	
3	2018년 개보수공사(연간 계약)	백석동 81-18 (1개소)	구도	17.12.27	18.1.2	18.12.24	176,422	㈜◇◇◇	-	1	-	1	
<b>소계</b>	<b>2019년</b>	<b>2건</b>							<b>76</b>	<b>5</b>	<b>73 (검토중 17포함)</b>	<b>8</b>	
1	2019년도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불로동 152-1 등 (42개소)	구도	18.12.27	19.1.2	19.12.26	245,145	◇◇◇건설	39	3	39 (허가판 검토중 17포함)	3	
2	2019년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청라동 153-3 등 (39개소)	구도	18.12.28	19.1.2	19.12.23	248,195	㈜◇◇◇ 개발	37	2	34	5	
<b>소계</b>	<b>2020년</b>	<b>2건</b>							<b>13</b>	<b>5</b>	<b>6 (검토중 6포함)</b>	<b>12</b>	
1	2020년도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마전동 223-15 등 (6개소)	구도	20.1.13	20.1.14	-	201,111	㈜◇◇◇ 건설	1	5	-	6	
2	2020년도 신설급수공사(연간계약)	청라동 140-2 등 (12개소)	구도	20.1.13	20.1.14	-	200,988	㈜◇◇◇ 건설	12	-	6 (허가판 검토중 6포함)	6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규정에 의거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점용공사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신청) 내지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준공확인 신청서에 설계도면 및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하시설물도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을 통해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하며, 도

로관리청은 이를 영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내지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를 이행하되 수도관 및 배수시설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가능하며,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①주요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②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도로점용허가 신청 등) 규정에 의거 별표3 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적은 표지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내걸어야 하며, 도로굴착을 수반함에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경우는 물론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인천광역시 도로점용(굴착·복구) 업무 처리 규칙」 제8조(허가의 신청), 제9조(검토 및 허가), 제10조(허가내용의 관련기관 통지 등) 규정에 의거 적법 허가 처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11조(착공계 제출) 내지 제14조(공사의 완료)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그 허가내용에 따라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를 착공하기 5일전까지 착공계를 작성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며, 당일 복구 완료가 어려운 계속점용공사의 경우에는 착공계의 제출과 동시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계를 작성하여 관할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법정도로에 15건의 상수도 관로공사(연간계약 포함)를 시행함에 관련기관에 **278건의 도로점용(굴착)허가**를 득한 것으로 확인됨에, ①**착공신고**의 경우 120건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으나 158건(도로굴착허가 대비 56.8%)은 감사일 현재 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②**준공신**

고의 경우 90건(적정처리 67건, 23건 허가기관 검토중 포함)을 제외한 188건(도로 굴착허가 대비 67.6%)은 감사일 현재 미 준공신고(준공도면 미 제출 포함)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상수도 건설공사와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신뢰도를 실추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도로 2차 복구공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의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등 4건을 상수도 관로공사에 따른 도로 2차 복구 포장로 추진 준공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천원, 톤, m)

연도	공사명	계약현황					포장면적	길이	폭	제품명	사용량	종류	비고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도급사	도로노선							
	총계 4건												
1	○○○,◆◆◆의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18.6.4	18.06.07 ~ 18.11.08	109,352	△△△ 건설	구도	14,042	2,294	3.6~8.7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506	순환	
2	○○○의 3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 복구공사	18.7.24	18.08.06 ~ 18.11.30	73,020	△△△	구도	9,229	1,352	3.6~6.9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091	순환	
3	2019년 ◇◇◇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19.10.21	19.10.23 ~ 19.12.18	138,140	㈜△△△ 건설	구도	14,742	4,017	2.0~9.0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751	순환	
4	2019년 서구 ◇◇◇ 2차 포장복구공사	19.10.30	19.11.8 ~ 19.12.13	96,406	△△△ 건설(주)	구도	11,942	2,1678	5.0~7.0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407	순환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호(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보면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 「도로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8조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로서 ①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이상, ②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하며,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을 환경부장관의 고시<sup>1)</sup>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규정에 의거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규정에 의거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작성)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V.순환골재 등의 재활용 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서 등 규정에 의거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별지 제33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sup>2)</sup>에게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별지 제34호서식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계획서를 미제출 하거나 실적보고 미 이행 시 같은 법 제66조(과태료) 제2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임.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급계약서 사본 또는 설계내역서 사본 등)
2. 법 38조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 또는 영 제17조에 따른 의무 사용대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환경부장관이 고시 : 「공사구간 및 포장면적 계산의 구체적인 방법」환경부고시 제2017-176호

2) 시·도지사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별표1】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함.

다만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48호, 2017.9.27.)를 보면 위 법령에 해당되는 법정도로의 경우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용도 및 사용량 기준에 의거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용 제품을 사용할 시 구입량의 40%이상을 의무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도로법」에 해당되는 구도 노선에 상수도 관로를 매설 하였고 이후 도로포장 2차 복구공사를 시행함에 최소 폭 3.0m이상 연장 1km이상의 2차 도로복구 포장공사를 추진 함으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사용으로 설계에 따라 반영한 것으로 확인됨에 아래 【표 1】과 같이 ‘○○○,●●●의 4개소 노후관 교체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의 1건의 경우 감사일 현재 관계기관에 사용계획서를 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표 1】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미 협의 현황**

(단위 : m<sup>2</sup>, m, 톤)

공사명	계약현황		사용규모			사용품목		기관협의		비고
	계약일	공사기간	포장면적	길이	폭	제품명	사용량	신청일	처리일	
<b>총계</b>	<b>2건</b>									
○○○,●●●의 4개소 ◇◇◇ 교체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18. 6.4	18.6.7~ 18.11.8	14,042	2,294	3.6~8.7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506	미협의	미협의	
○○○의 3개소 ◇◇◇ 교체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18. 7.24	18.8.6~ 18.11.30	9,229	1,352	3.6~6.9	순환 아스팔트 콘크리트	1,091	미협의	미협의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또한 아래 【표 2】과 같이 ‘2019년 ◇◇◇ 교체구간 2차 포장복구공사’의 1건의 경우 관계기관 승인은 완료하였으나, 관계기관 승인 문서를 보면 준공검사 전 순환골재 등 사용

실적보고서를 제출(올바로시스템 등록) 하도록 하였으나 2건 모두 지연 등록함에 최대 142일이 지난 감사중에 등록하는 등 건설공사와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 실적등록 지연 현황**

(단위 : m<sup>2</sup>, m, 톤, 일)

공사명	계약현황			사용규모			기관협의		실적등록		비고
	계약일	공사기간	준공 검사일	포장 면적	길이	폭	신청일	처리일	등록일	지연 일수	
<b>총계</b>	<b>2건</b>										
2019년 ◇◇◇ 교체구간 2차 포장복구공사	19. 10.21	19.10.23 ~ 19.12.18	20. 12.20	14,742	4,017	2.0~9 .0	19. 11.14	19. 11.20	20. 1.9	20	
2019년 서구 ◆◆◆공사 2차 포장복구공사	19. 10.30	19.11.08 ~ 19.12.13	19. 12.23	11,942	2,167	5.0~7 .0	19. 11.21	19. 11.22	20. 5.13	142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 건설사업 일상·계약심사 행정절차 미 이행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와 같이 ‘2017년 서구1구역 □□□□공사(연간 계약)’ 등 14건의 상수도 건설사업을 추진 또는 준공한 사실이 있다.

(단위 : 천원)

년도	연번	계약명	설계금액			일상감사 여부			계약심사 여부			비고
			계	관급	도급	금액	처리 일자	미사유	금액	처리 일자	미사유	
<b>총계</b>		<b>14건</b>				- 부적정 14건(관급만 적정2, 관급만 신청 반려 3 포함)			- 부적정 14건			
2017년	소계	5건				부적정 5건			부적정 5건			
	1	2017년 서구1구역 □□□□공사(연간계약)	340,232	90,232	250,000	340,232	-	누락	340,232	-	누락	
	2	2017년 서구2구역 □□□□공사(연간계약)	339,076	89,076	250,000	339,076	-	누락	339,076		누락	
	3	2017년 서구3구역 □□□□공사(연간계약)	310,081	60,081	250,000	310,081	-	누락	310,081	-	누락	
	5	2017년 서구구역 □□□□공사(장기매수계약)	323,004	36,245	286,759	323,004	-	누락	323,004		누락	
	6	2017년 서구2구역 □□□□공사(장기매수계약)	323,004	36,245	286,759	323,004	-	누락	323,004		누락	
2018년	소계	4건				부적정 4건(관급만 처리 2건 포함)			부적정 4건			
	7	2018년 서구1구역 □□□□공사(연간계약)	339,346	89,346	250,000	339,346	-	누락	339,346		누락	
	8	2018년 서구2구역 □□□□공사(연간계약)	339,204	89,204	250,000	339,204	-	누락	339,204		누락	
	9	2018년도 서구1구역 □□□□공사	326,590	36,707	289,883	326,590		일부누락(관급만 처리)	326,590		누락	
10	2018년도 서구2구역	326,590	36,707	289,883	326,590		일부누락	326,590		누락		

		□□□공사					(관급만 처리)				
2019년	소계	5건				부적정 5건(반려3건 포함)		부적정 5건			
	11	2019년 서구1구역 □□□공사 (연간계약)	339,327	59,327	280,000	339,327		누락 (관급만 신청함에 반려, 공사와 함께 신청 요청)	339,327		누락
	12	2019년 서구2구역 □□□공사 (연간계약)	339,326	59,326	280,000	339,326		누락 (관급만 신청함에 반려, 공사와 함께 신청 요청)	339,326		누락
	13	2019년 서구3구역 □□□공사 (연간계약)	339,326	59,326	280,000	339,326		누락 (관급만 신청함에 반려, 공사와 함께 신청 요청)	339,326		누락
	14	2019년도 서구1구역 □□□공사 (장기계속계약)	302,384	24,777	277,607	302,384		누락	302,384		누락
	15	2019년도 서구2구역 □□□공사 (장기계속계약)	302,384	24,777	277,607	302,384		누락	302,384		누락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 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제14조(일상감사), 제15조(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규정에 의거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기구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sup>1)</sup>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실시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감사대상 및 기준) 규정에 의거 계약업무(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기타계약)의 경우 추정금액<sup>2)</sup> 종합의 경우 5억원, 기타(전문공사 포함) 3억원 이상의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추정금액이 일상감사 대상 금액을 새로이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6조(감사의뢰) 규정에 의거 집행부서의 장은 업무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7조(감사실시) 규정에 의거 감사관은 일상감사 의뢰된 집행업무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등을 감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3조(심사 대상사업)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금액 20억원

1) 주요업무 집행 : ①주요정책의 집행업무, ②계약업무, ③예산관리 업무, ④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추정금액 : 도금액+관급액

이상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신기술·신공법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5조(심사요청) 규정에 의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6조(심사실시) 규정에 의거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함.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상수도 관로공사 등을 추진함에 발주 당시 추정금액 대비 일상감사·계약심사 대상사업이 되는 경우 필히 감사부서를 통해 일상감사를 득하여야 하고, 이후 市 감사관실을 통해 계약심사를 득하여야 함에도 일상감사의 경우 ①추정금액을 대상으로 대상금액을 설정함에 공사비 없이 관급자재만 일상감사를 처리한 2건, ②일상감사 미 실시 12건(관급자재만 신청 시 건설공사와 포함 재 의뢰로 반려된 3건 포함) 등 총 14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미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계약심사의 경우 위 현황과 같이 14건 모두 계약심사를 미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건설사업의 사업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수감기관 의견】

긴급누수복구공사, 블록정비공사, 급수공사, 개보수공사 등에 대한 연간단가 계약의 운영은 책정된 사업별 예산총액에 사업기간을 정하여 급수부에서 일괄 결정한 공종별 해당년도 일위대가로 적용 및 발주하여 사업대상자(시공사)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또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업대상, 공사물량, 적용 공종 및 일위대가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수도공사(연간단가계약)의 사업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사 및 심사의 실효성 저하 및 행정력 낭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감사기관 의견】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 제3조를 보면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 같은 규정 제5조(감사중점 사항)를 들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이외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계약방법 및 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적 차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인천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제4조(심사제외사업)에 의거 심사제외사업을 구분하고 있음에 동 사업들을 제외하고는 있지 않으나, 단순 원가계산의 적정 작성 이외 사업 전반에 대해 예방적 차원으로 사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수감기관의 의견은 이유없다 사료됨.

단 업무부 감사팀에서는 2020년 연간계약공사의 경우 조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급수부로 하여금 연간계약공사에 적용될 일위대가 또는 단가산출서에 대해 사전 일상감사를 일괄 진행함으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조기집행을 극대화 하는데 노력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인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에 계상<sup>1)</sup>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7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안전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수급인(계약자)이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같은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서 정하고 있으며,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발주공사(‘건축,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에 적용하는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매년 2월경 발표하며, 공사금액 및 종류의 따라 계상 요율을 정하고 ‘재료비(관급포함)+ 직접노무비 합계액의 2.93%,~1.33%까지 적용함.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에 따르면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정산)서’를 제출받아 상기 기준에 따라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안전 시설 또는 공사용 자재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청구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이에 따라 2016. 4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관리비 계상 건설공사 ‘2016년도 서구1구역 ▲▲▲▲공사(연간계약)3차’ 등 64건 추진사업에 대하여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2019년도 서구3구역 ▲▲▲▲공사(연간계약)’ 등 총 3건의 경우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에 해당되는 도로교통 관련 시설물을 구입하고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1】 안전관리비 사용목적외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발주부서)	도급자	최종 정산액		정산현황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 전 관 리 비	내용	금액		
<b>총계 : 3건</b>					<b>1,795</b>		
2019년도 서구3구역 ▲▲▲▲공사(연간계약)	(주)◇◇◇◇ 개발	236,808	2,146	1. 가림막휨스 : 375 2. 가림막지주 : 90	375	목적외사용	
○○○ 왕길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주)	163,493	3,922	1. 안전휨스 : 540	540	목적외사용	
○○○ 신현동 일원 외 5개소 노후관교체공사 도로2차 포장공사(단기계약)	(주)◇◇◇◇	110,727	2,769	1.싸이보드 : 880	880	목적외사용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항목에 대한 집행내용의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함에 따라 약 1,795천 원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은 채 집행한 사실이 있다.

##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당 청구(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등) 정산업무 소홀

한편 발주처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준공 또는 기성요청 시 ‘안전관리비 사용 내역(정산)서’와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구매집행 사진 등)로 제출된 해당서류의 진위여부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빙자료의 확인에 있어 ‘전자세금계산서<sup>2)</sup>’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사실 조회’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준공·기성 신청시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업체로부터 월별 매입 목록표를 제출받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발급(취소 또는 금액 축소) 여부 등을 확인<sup>3)</sup>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비로 집행(구매) 한 물품 등의 증빙사진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 증빙자료의 적정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금번 정기감사 기간 중 상기와 같은 방법을 통해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서부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아래 [붙임]의 ‘2017년 서구1구역 ◆◆◆◆◆ (연간계약) 3차’ 등 총 17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①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sup>4)</sup>, ②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 미 제출, ③타 공사와 중복된 허위 자료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청하여 약 27,509천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제도 시행(2015년 7. 1. 이후)

3)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자’(계약상대자)를 통해 지정 월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를 통해 수정신고(신고 금액 축소 또는 취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4) 계약상대자의 거래업체와 다른명목으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업자 번호, 승인번호를 조작하여 제출하였음을 자인서를 통해 인정함.

결과적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실제로 집행하지도 않은 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하였음에도 확인 및 정산 등을 소홀히 하여 [붙임]와 같이 건설공사 총 62건 중 안전관리비 19건 총 48,830천 원 중 25,192천 원(중복 4,112천원 제외) 상당을 확인하여 감액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다.

### 【수감기관 의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시공사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시공사가 작성한 사용실적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공사감독은 시공사에서 제출한 서류(거래내역서 및 사진) 및 공사 시 착용여부 등을 확인한 후 정산하였음.

감사 지적사항인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및 근거사진 중복제출에 대한 확인은 공사감독관의 업무수행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전자세금계산서 허위발급, 근거사진 중복에 대한 19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임을 감안하여 공사준공 및 정산처리 완료후에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환수처분이 곤란하다고 사료됨.

### 【감사기관 의견】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6조를 보면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 관계서류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함에 가림막웬스, 안전웬스 등은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별표2)의 2.안전시설비 등에 해당되는 품목으로 필히 감독자 등은 사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 등의 절차를 거쳐 정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비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비치된 서류와 현장 근로자 착용여부를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제출된 증빙서류의 사진 등과 현장 근로자 착용 품목의 일치 여부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동 제출된 입증서류가 타 현장과 중복된 서류 등으로 현장 근로자의 착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사업비에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통해 구입하였음을 입증할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사항으로 타 건설현장에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사진,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허위 제출 건 등은 금회 감사 시 확인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 제시한 목적외 사용을 하였을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동의(소명)등의 절차 없이 환수처분이 곤란하다는 의견 보다는 공공기관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 또는 부정한 서류임을 감안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금회 소명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이 확인된 경우 환수를 요구하거나, 또는 법 175조(과태료) 규정에 의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에서 제시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VII-나-1)과태료 부과 기준에 의거 목적 외 사용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목적 외 사용금액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수감기관에서 제시한 임의 규정으로 목적외 사용에 대해 환수는 곤란하다는 의견은 이유 없다 판단됨.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금번 정기감사에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 지출금 25,192천원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소명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①목적외 품목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적의 정산하시기 바라며, ②허위 서류 제출 등 입증자료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소명이 안될 시 환수 또는 과태료 처분하시기 바람.

[붙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부당청구 내역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발주부서)	도급자	준공 일	최종 정산액		과다 정산액(부가세 포함)					지적현황	비고
			준공금	안전 관리비	소계 (중복)	허위세금계산서		입증자료 중복등 (서류상)	목적 외 사용		
						전자세금 계산서 (서류상)	입증자료 미비사항				
2017년 서구1구역 □□□□공사(연간계약)3차	◇◇◇◇ 주	2017. 12.18	225,323	4,460	1,200			1,200		사진중복	
2017년 서구2구역 □□□□공사 (연간계약)	주◇◇◇◇ 건설	2017. 12.14	236,808	1,026	1,026	1,026 (1,393)				세금계산서 확인불가	
2018년 서구1구역 □□□□공사 (연간계약)	◇◇◇◇ 건설주	2018. 10.5	246,039	4,883	4,883	4,883 (5,207)				세금계산서 확인불가	
2018년 서구3구역 □□□□공사 2차 (연간계약)	주◇◇◇◇ 건설	2018. 12.31	52,937	1,029	1,030			1,030		사진중복	
2019년도 서구3구역 □□□□공사 (연간계약)	주◇◇◇◇ 개발	2019. 12.23	236,808	2,146	375				375	목적외사용	
2019년도 서구관내 □□□□공사 (연간계약)	주◇◇◇◇ 건설	2019. 12.26	36,421	358	358		358			입증자료 누락	
2017년 서구1구역 □□□□공사 (연간계약)	◇◇◇◇ (주)	2017. 11.14	176,221	3,464	1,485		1,485			입증자료 누락	
2018년 서구1구역 □□□□공사 (연간계약)	◇◇◇◇ (주)	2018. 11.16	180,788	3,571	1,860 (3,840)		1,980	1,860		사진중복 및 입증자료 누락	
2019년 서구2구역 □□□□공사 2차 (연간계약)	◇◇◇◇ (주)	2019. 12.26	50,918	645	645		645			입증자료 누락	
가정동1-3번지 일원 □□□□공사	주◇◇◇◇	2017. 5.8	67,098	1,664	600		600			입증자료 누락	

2017년 서구2구역 □□□□공사 (장기계속계약 1차분)	◇◇◇◇ 공업(주)	2017. 12.21	183,172	3,487	<b>3,487</b>			3,487 (4,237)		사진중복
00000 왕길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 건설(주)	2017. 4.24	163,493	3,922	<b>2,167</b> (2,707)	2,167			540	세금계산서 확인불가 및 목적외사용
00000 신현동 일원 외 5개소 노후관교체공사 도로2차 포장공사 (단기계약)	주◇◇◇◇ 건설	2017. 9.27	110,727	2,769	<b>880</b>				880	목적외사용
000,000 가좌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 (주)	2018. 6.1	137,379	3,237	<b>1,806</b> (2,842)	1,806		1,036		세금계산서 확인불가 및 사진중복
000,000 삼곡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 개발(주)	2018. 5.9	96,349	1,938	<b>360</b>			360		사진중복
000 마전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 건설(주)	2018. 5.28	62,292	1,210	<b>190</b>			190		사진중복
000 신현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 개발(주)	2018. 7.10	70,400	1,402	<b>250</b>			250		사진중복
000,000 가좌동 일원 노후관 교체 공사	주◇◇◇◇ 건설	2019. 6.3	116,600	2,283	<b>254</b>			254		사진중복
000내 석남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주◇◇◇◇ 건설	2017. 6.15	177,067	2,336	<b>2,336</b> (2,892)	2,336		556		세금계산서 확인불가 및 사진중복
<b>합 계</b>	<b>19개사</b>			<b>45,830</b>	<b>25,192</b> (37,473)	<b>12,218</b> (12,909)	<b>5,068</b>	<b>10,223</b> (10,973)	<b>1,795</b>	<b>중복4,112</b> =1980+540+ 1036+556

※ 서부수도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별첨 총괄 세부자료 참조)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소블록유량계실 전기사용량 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 소블록유량계 유지관리 현황

소블록유량계 (개소)	배수펌프(대)	펌프마력(Hp)	전력량계(개소)	
			설치	미설치 (가압장 공용)
78	78	44.5	71	7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소블록유량계실에는 배수펌프(통상 1/2마력) 외에 전기사용량이 많지 않은 설비로 구성(통신모뎀 또는 RTU(remote terminal unit),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트랜스미터(transmitter) 등) 되어 있어 정상적인 유량계실의 경우 월 15~30kW의 전기 사용량이 적정하므로 유량계 업무담당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매월 부과되는 전기사용량이 전월 또는 전년 동월 대비 전기사용량이 과다한 유량계실에 대해 배수펌프의 고장 정지 여부 등 시설물에 대한 직접 점검이나 유량계 유지관리 용역업체에 원인조사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서부수도사업소는 소블록유량계실을 관리하면서 2016년 9월 부터 819소블록 외 12개 유량계실 전기사용량이 계절적 요인 등을 감안하더라도 278회 이상 과다하게 고지(붙임 참조)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현장 확인이나 원인 분석 등을 하지 않는 등 유량계실 유지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 (주의) ① 매월 한전에서 고지되는 소블록유량계실 전기요금(사용량)을 기록 관리하여 전년 동월 또는 당해 연도 전월대비 사용량이 과다하거나 적게 부과되면 유지 관리 용역업체에 점검 및 수리토록 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② 전력량계 미설치(가압장 전기 사용) 소블록유량계실은 전력사용량 분석을 위한 별도의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매월 사용량에 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권 고 요 구

제 목 전기안전관리 및 보수공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 ‘가압장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는 가압장 기전설비의 안전운영과 시설유지 및 가압구역 관리를 통한 고지대 주민의 원활한 급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 ‘상수도 유량계 관리업무 지침’과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지침’제20조 (유량계, 수압계 설치 및 관리)에 따라 사업소장은 블록내 유수율을 분석하여 유효수량 및 무효수량을 체계적으로 예측하고, 블록내 적정수압 관리를 위하여 유량계 및 수압계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 현 황

1. 가압장

▶ 유지관리 현황

가압장(개소)	펌프(대)	펌프마력(Hp)	급수인구(명)	비고
12	25	214	15,186	전기안전관리용역(가정)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연도별 관련 예산 현황(2016.9.~2020.4.)

예산 \ 연도별	합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천원)	323,000	63,000	70,000	70,000	60,000	60,000
유지보수(건)	31	1	8	9	12	1
공사비(천원)	137,580	8,804	30,432	47,277	48,597	2,470
제어반 신설 및 교체공사(건)	2	0	1	0	1	0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설비분야별 수선내용(2016.9.~2020.4.)

고장개소 연도	합계	펌프	자동제어	기전설비	밸브	배관	모터	통신
합계	53	5	13	27	-	-	3	5
2016	1	-	1	-	-	-	-	-
2017	13	1	2	9	-	-	1	-
2018	20	2	5	11	-	-	-	2
2019	18	2	5	7	-	-	2	2
2020	1	-	-	-	-	-	-	1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2. 소블록유량계

▶ 설치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블록유량계(개소)	71	78	79	78	78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연도별 관련 예산 현황(2016.9.~2020.4.)

예산 \ 연도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천원)	378,900	25,200	81,300	87,300	73,800	111,300
유지보수(건)	35	2	10	8	13	2
공사비(천원)	137,365	11,092	71,787	26,517	22,125	5,844
제어반 신설 및 교체공사(건)	6	-	3	1	1	1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설비분야별 수선내용(2016.9.~2020.4.)

고장개소 연도	계	유량계 센서	압력센서	메인단말기 보드	UPS	배수설비	기타기전 설비
계	82	3	14	13	24	17	11
2016	23	-	-	2	14	3	4
2017	33	-	8	7	6	8	4
2018	5	-	1	-	4	-	-
2019	19	3	5	2	-	6	3
2020	2	-	-	2	-	-	-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3. 수압계

▶ 연도별 설치 현황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압계(개소)	5	15	33	33	33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연도별 관련 예산 현황(2016.9.~2020.4.)

예산 연도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천원)	유량계 수선유지비 공통					
유지보수(건)	1	-	-	-	-	1
공사비(천원)	6,523	-	-	-	-	6,523
제어반 신설 및 교체공사(건)	28	-	10	18	-	-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설비분야별 수선내용(2016.9.~2020.4.)

고장개소 연도	합 계	디지털 압력센서	아날로그 압력계	기전설비	통신	기타
합계	18	9	8	-	1	-
2016	-	-	-	-	-	-
2017	-	-	-	-	-	-
2018	-	-	-	-	-	-
2019	-	-	-	-	-	-
2020	18	9	8	-	1	-

※ 서부수도사업소 감사제출 자료 재구성

- 서구지역 고지대 수용가에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점단 외 11개<sup>1)</sup>(가압펌프 25대, 161KW)의 가압장을 운영 관리하고 있음.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가압장 유지관리를 위해 31건(137,580천원)의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고장시설물에 대한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31건의 시설보수 공사 등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공사의 내역을 보면 가압펌프, 모터, 제어반 내 전기부품 등에 대한 고장이나 예방보전을 위한 것으로 가압장 펌프용량에 따라 부품 규격의 차이는 있으나 수리 교체 항목은 한정되어 있어 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해 89개 블록에 78개의 소블록유량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소블록유량계 유지관리를 위해 35건(137,365천원)의 크고 작은 보수공사를 하면서 고장시설물에 대한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35건의 시설보수 공사 등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공사의 내역을 보면 유량계 센서, 메인단말기, UPS 등 전기부품에 대한 고장이나, 예방보전을 위한 것으로 블록별 유량계 및 UPS의 형식·제작사 등에 따라 부품 규격의 차이는 있으나 수리 교체 항목은 대체로 한정되어 있어 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유수율 제고 등을 위해 89개 블록에 33개의 수압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음.

2016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압계 유지관리를 위해 1건<sup>2)</sup>(6,523천원)의 보수공사를 하면서 고장시설물에 대한 즉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 업무의 특성을 이유로 1건의 시설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였고,

1) 청마가압장 : 2019년 2월 가동중지

2) 제어반 신설 및 교체공사 28건은 모두 수압계 신규 설치 건으로 미산정 함

공사의 내역을 보면 디지털·아날로그 압력계 등 전기판넬내 전기부품 등에 대한 고장이나 예방보전을 위한 것으로 수압계의 형식·제작사 등에 따라 부품 규격의 차이는 있으나 수리 교체 항목은 대체로 한정되어 있어 단가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됨.

- 현재 가압장·소블록유량계·수압계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 전기나 펌프, 자동 제어 등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유지보수 설계(견적 등)를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할 때 가압장·소블록유량계·수압계 유지관리 보수공사의 발주 방법을 연간 단가계약 방법으로 시행하여 설계·발주 업무가중과 공사의 분할발주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 또한 가압장·소블록유량계·수압계 설비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블록 유량계와 가압장 유지보수비 등의 예산을 조정하여 전기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용역을 시행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함.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권고) 가압장·소블록유량계·수압계의 설비유지관리용 보수공사가 대부분 수리교체 항목이 유사한 점, 고장건별 발주에 따른 잦은 설계 발주업무의 경감과 소액 분할 발주 의혹 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연간단가계약이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청사관리 용역 등 관리감독 소홀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 청사관리 용역 현황

위탁관리 용역명	용역대상	용역업체	측정 및 시험항목
소방시설안전관리	청사소방설비 (연면적 2,162㎡)	○○○○(주)	- 종합 정밀점검 - 작동기능 점검시험 등
전기안전관리	청사전기설비 102kW/380V	(주)○○○○○○○	- 누설전류 - 절연 및 접지저항 등

○ 서부수도사업소는 수전전력 102kW의 자가용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의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민간위탁용역으로 관리하고 있어 업체에서 매월 1회 절연저항 및 전기사용 상태 등을 측정 관리하고 있으며,

○ 청사 소방 안전관리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에 따라 매월 1회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있음.

○ 감사당일(5/25) 소방펌프 기계실 등을 확인한 결과 각 층마다 피난안내도가 미부착 되어 있고, 소방펌프 베이스에 녹 발생(부식)이 진행되고, 화재발신기의 표시등은 전구가 불점등되어 있으며, 소화기의 현황도 파악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에 따라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계획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서부수도사업소는 연간 2회의 자체·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나 2019년에는 자체훈련을 미 실시 하였으며, 2017년과 2016년에는 자체훈련과 합동훈련 실시일이 짧은 기간에 연이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소방훈련 현황》

구 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자체훈련	미 실시	2018. 07. 18.	2017. 12. 20.	2016. 12. 29.
합동훈련	2019. 11. 12.	2018. 10. 23.	2017. 12. 08.	2016. 11. 03.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의하면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 등의 사유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9년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2020년 1월 10일 인사이동으로 선·해임을 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 미 이행하고 있음.
- 청사 전기설비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전장비(절연장화, 절연장갑, 안전모 등)를 구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구비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 정문 기둥위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은 전선피복이 박리되어 있어 우천시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이며, 비상발전기는 중간부위에 누유가 발생되며, 비상발전기 배전반 내에는 폐기된 비상발전기 관련 자재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음.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용역 및 전기안전관리용역에 대하여 매월 점검보고서와 소방설비안전관리 용역에 따른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 문서로 등록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조속히 구입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기사업법」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하여 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청사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9]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 요구

제 목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현 황]

- 물품 미등록 현황 : 붙임1) 참조
- 물품 현황 불일치 : 붙임2) 참조

### 1. 물품의 미등록 사용

-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 제5조(물품의 분류)에서 물품 품종상태의 구분은 그 성질에 따라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하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비품으로 등록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은 내용연수가 5년 이상이거나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 원 이상인 공구, 기구 및 비품구입비로 예산편성시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내용연수 5년 미만이고, 품목별 개별 취득원가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수익적 지출의 사무관리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득 후 자산취득비로 구입된 물품은 물론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입된 비품도 반드시 물품으로 등록 관리되어야 함.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6. 9월 이후“제수변 철개탐지기”외 3종 4개 물품을 자산취득비 또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구입하여 물품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 물품 현황 불일치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66조(물품관리사무의 전산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동법 시행령 제60조(재물의 조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정기재물조사)에 따라 재물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 수량 및 가액을 조정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함.

-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에서 잉여물품이나 부족물품에 대한 재물조정 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 불임2)와 같이 개인용 컴퓨터(데스크톱 포함) 48대를 포함 23개 품목 49개의 물품이 물품관리 프로그램에 등록된 물품과 실제 보유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인천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물품은 미등록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 구매 후 공사용 자재를 제외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관리 업무담당자에게 반드시 검수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정기재물조사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았거나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도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물조정 절차를 거쳐 물품프로그램에 등록된 물품과 현품을 일치시켜 물품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물품대장 (미등재) 자료

연번	물품명(규격)	수량	구입비(원)	구입년월일	예산과목	비고
1	제수변철개탐지기(M-97)	1	1,937,000	2018.03.07	자산취득비	
2	전자레인지	1	109,000	2016.11.02	일반운영비	
3	라꾸라꾸 침대	1	206,600	2017.03.29	사무관리비	
4	잔류염소측정기	1	890,000	2018.07.09	시설부대비	

[붙임2] 물품관리시스템 현황

번호	물품명(규격)	장부 수량	실사 수량	수량차 (장부-실사)	비고
1	액정모니터, 다나와컴퓨터, SDM-24LEDJH, 60.8cm	36	35	1	
2	액정모니터, 삼성전자, CN/LS20A550HSA/KR, 50.8cm	1	0	1	
3	데스크톱컴퓨터, 다나와컴퓨터, WA6A-6D-W3MAJ	50	48	2	
4	데스크톱컴퓨터, 대우루컴즈, 솔로탑	26	25	1	
5	데스크톱컴퓨터, 엘지전자, B55PS.AR5M10D	3	4	-1	
6	사물함, 500x550x1895mm	6	2	4	
7	보조책상, GOD05043	5	3	2	
8	응접의자	8	7	1	
9	기타수질분석기	4	2	2	
10	접이식의자, 어넥스, PBA94HO	8	4	4	
11	정수기	1	0	1	
12	차량용냉온장고	1	0	1	
13	차량용항법장치	12	6	6	
14	기계청진기	5	4	1	
15	체력단련기구진열대, 덤벨(아령)정리대	1	0	1	
16	캐비닛, 광명사무용가구, 600x450x720	1	0	1	
17	캐비닛, 포머스	4	0	4	
18	캐비닛, 대풍종합가구	21	16	5	
19	캐비닛, GOC	48	47	1	
20	탁도계	8	2	6	
21	태블릿컴퓨터, hp	2	1	1	
22	인버터	1		1	
23	회의용탁자	5	4	1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도 자재창고 및 재고자재 관리 관련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수도시설관리소에서는 통합 자재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재고자재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을 위해 「2020년 상수도 자재관리 운영계획 (수도시설관리소-1204, 2020. 1. 30.)」을 수립하여 수도사업소에 통보 하였으며, 서부수도사업소의 자재창고 현황과 주요 재고자재 보유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자재창고 및 재고자재 현황

구 분	자재창고㎡			주요 재고자재 보유 현황(m, 개)							
	계	지상	지하	직관	기타자재(개)						
					소계	이형관	밸브	철개	압륜	보호통	소화전
수 량	166	133	33	279m	1,510	559	253	13	418	263	4

※ 자료: 서부수도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 1. 지하주차장(內) 자재창고 운영 부적정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는 자재창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 2개면을 활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자재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등 주차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하주차장 화재나 재난 발생시 2차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 청사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상수도 재고자재 관리 소홀

「인천광역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여야 하고,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는 재고자재를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재고자재의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자재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림] 지하창고 및 재고자재 관리실태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 (시정) ① 주차장법에 위배되고, 화재 등 발생시 2차 재난의 우려가 있는 지하 주차장(內) 자재창고를 폐쇄하시기 바라며,
- ② 재고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자재창고 개선 및 자재창고 추가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등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 ③ 자재창고(內) 재고자재의 품목별·규격별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공사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자재가 신속히 출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기록물관리(용역성과품 등록) 소홀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아래의 [표]와 같이 「2016년 서부 □□□ □□□□ 및 관리 용역 등 5건」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성과품을 확보하였다.

[표] 용역수행 성과물 확보 현황

연번	용역명	수행기간	도금액 (천원)	성과물 확보 (CD, 도서 등)	수행업체	점 등 표 기 여 부	수 호 번호 여 부
1	2016년 서부 □□□ □□□□ 및 관리 용역	2016.02.11 ~ 2016.12.19	46,236	1.분기별 점검 결과보고서 2.교정검사보고서	(주)△△△△ △△△△	x	
2	2017년 서부 □□□ □□□□ 및 관리용역	2017.02.15 ~ 2017.12.15	56,738	1.분기별 점검 결과보고서 2.교정검사보고서	(주)△△△△	x	
3	2018년도 서부 □□□ □□□□ 및 관리용역	2018.02.12 ~ 2018.12.24	54,362	1.분기별 점검 결과보고서 2.교정검사보고서	(주)△△△△	x	
4	2019년도 서부 □□□ □□□□ 및 관리용역	2019.03.11 ~ 2019.12.19	60,511	1.분기별 점검 결과보고서 2.교정검사보고서	(주)△△△△	x	
5	□□□□□ 분석 및 관리용역(1차분)	2018.10.10 ~ 2019.12.24	681,230	보고서 2	(주)△△, (주)△△, (주)△△	x	

※ 자료: 서부수도사업소 제공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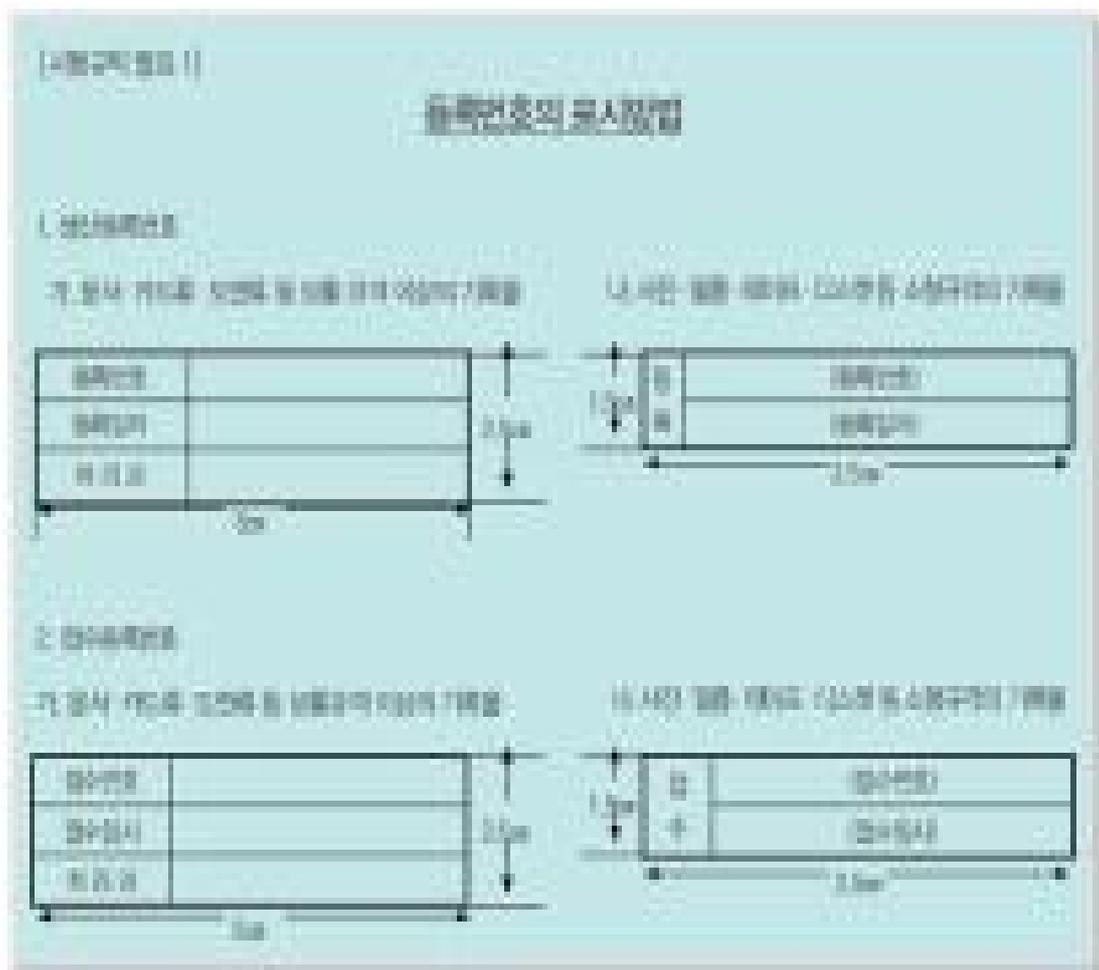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진본성<sup>1)</sup>,

1) 진본성: 어떤 기록이 위조되지 않은 원래 그대로의 것이며, 훼손된 바 없는 상태인 것을 지칭

무결성<sup>2)</sup>, 신뢰성<sup>3)</sup> 및 이용가능성<sup>4)</sup>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포함하여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기록물을 생산 또는 접수할 때에는 그 기관의 전자기록 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그 기록물에 표기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우측 상단의 여백에 아래의 [그림1] 과 같이 접수등록번호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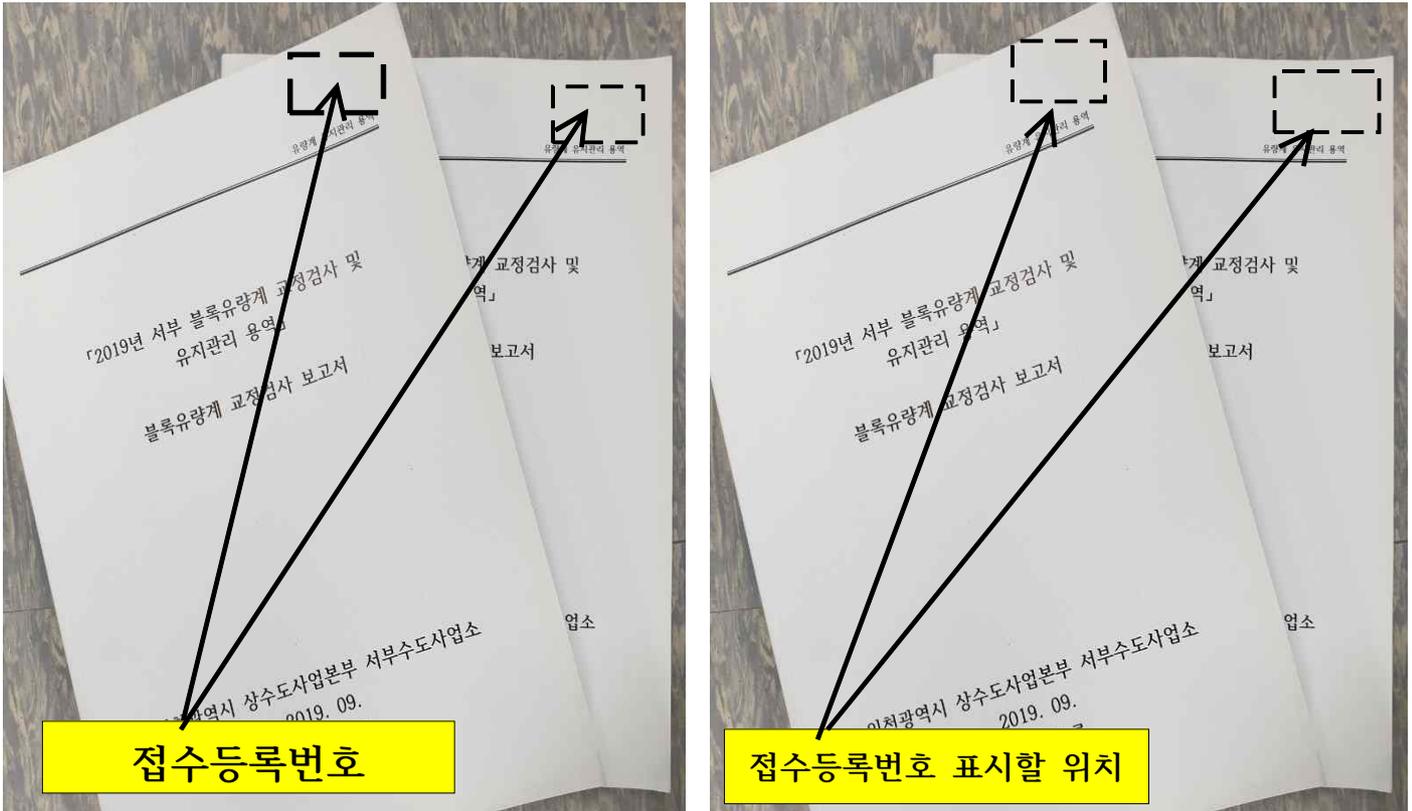
[그림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1]



2) 무결성: 망실, 훼손, 손상, 변조 등에 의하여 기록이 변경되지 않고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지칭  
 3) 신뢰성: 기록의 내용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 업무처리나 활동 또는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이후의 업무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에 관한 것을 지칭  
 4) 이용가능성: 기록의 위치를 검색·제시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상태를 지칭(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업무활동과 직접 관련된 바대로 계속 제시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위의 [표]와 같이 용역을 수행하여 확보한 성과품에 대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아래의 [그림2]와 같이 표시·관리하여야 함에도 용역수행 5건 모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그림2] 용역수행 성과품 접수 시 '접수등록번호' 누락 예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2016년 서부 □□□ ■■■■ 및 관리 용역 외 4건, (2017년 서부 ●●●◆◆◆ 및 관리용역, 2018년도 서부 □□□ ■■■■ 및 관리용역, 2019년도 서부 □□□ ■■■■ 및 관리용역, (1차분)☆☆☆☆ 분석 및 관리용역)의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 확보한 성과품에 대하여는 [그림1]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별표1]에 따라 접수등록번호를 표시·관리하시기 바라며,

(주의)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주의 요구

제 목 유수율 제고 업무추진 관련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사업소장은 블록시스템 구축 및 정비, 노후관 교체, 불용관 정비 등을 연계하여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시행하고, 사용량 증대와 생산량 저감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서부수도사업소는 2020년 유수율 목표를 92%로 설정하였고, 유수율제고 단위사업별 추진목표는 아래의 [표1], 블록시스템 관리 현황은 [표2]와 같다.

[표1] 유수율 제고 단위사업별 추진목표

구 분	유수율 (%)	노후관 정비 (m)	불용관정비 (m)	누수탐사 (건)	유량계관리 (개소)	수압계관리 (개소)	유효미터 (전)
목 표	92	5,122	11,600	150	78	33	13,869

※ 자료: 2020년 서부수도사업소 유수율 제고 세부실천계획 발취

[표2]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리 현황

블록구축현황			정상블록		사고블록				
총블록	구축	미구축	블록수	정상율	소계	유량계고장	해제	104%초과	70%미만
89	76	13	49	55%	27	3	13	3	8

※ 자료: 서부수도사업소 3월 유수율 자체분석자료 발취

## 1. 소블록 비상 공급관 및 경계면 관리업무 소홀

「지침」 제19조(비상 공급관 설치 및 관리)에 따르면, 블록내의 관로파손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등에 대비하여 블록간에 상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 공급관을 설치하고, 비상 공급관은 블록의 주 인입관경 및 수압 등을 고려하여 2개소 이하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계면 및 정체수 방류를 위한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년 1회 이상 주기적인 방류와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소블록 비상 공급관 설치(기존 체수변 활용 포함) 및 경계면 정체수 방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음에 따라, 관로파손 또는 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등에 대비한 소블록 비상 공급관 설치·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2.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기성준공에 따른 후속조치 소홀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블록시스템 재점검을 통해 우수율과 상수도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수율 향상을 위한 블록시스템 분석 및 관리용역 (이하 “용역”）」을 아래 [표3] 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며,

[표3] 용역사업 개요

과업기간	사업비	과업대상	누수탐사	부단수 내시경	고립확인	수압측정
2018.10.~ 2021.10.	2,700백만원	75개 소블록	579km	60개소	38개 블록	300개소

2019. 12. 24. 1차년도 기성부분<sup>1)</sup>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면서 유량 및 수압분석, 밸브류 조사 및 확인, 수압측정, 구역고립, 수용가 조사, 부단수내시경, 대구경 계량기 등의 자료를 성과품으로 확보하였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는 확보한 성과품을 면밀히 분석한 후 사업소에서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정·신속하게 조치하여 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의 [표4]와 같이 소블록 유량계가 미설치 되는 등 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과업기간(2018. 10. 10. ~ 2019. 12. 24.), 기성금(681,230천원)

[표4] 용역성과품 미조치 사항

성과품 명	미조치 사항	향후 조치할 사항
유량 및 수압분석	○ 872블록 유량계 미설치	○ 유량계 설치
밸브류(경계변)조사 및 확인	○ 23개 소블록 경계변 조사내역 → GIS 시스템에 미입력	○ GIS 시스템에 입력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①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통해 블록별 비상공급관을 확정(기존 제수변 활용)하고 GIS 시스템에 등록하시기 바라며, 소화전 및 이토변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정체수 방류 등 단수 등에 대비한 비상공급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② 용역 1차기성에 따른 후속조치가 미흡한 000블록 유량계 미설치 건과 23개 소블록 ○○○조사 보고서 GIS 미입력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조치(유량계 설치, GIS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권고 ·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 관련

기 관 명 급수부,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상수도 관리시스템(이하 “GIS”)」은 상수도 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한 정보로써, GIS 정확도를 높이고 GIS 협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상수도 GIS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관리시스템(GIS) 운영지침(이하 “지침”)」에 따른 서부수도사업소의 담당자 지정(정, 부)현황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GIS 담당자 지정 현황

구 분	팀 명	직 급	성 명	업무담당 기간	비 고
정	유수율제고팀	공업9	○○○	2020. 2. 21. ~ 감사일 현재	
부	유수율제고팀	공무직	○○○	2019. 2. 7. ~ 감사일 현재	

※ 자료: 서부수도사업소 제공자료 재구성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6년 9월 ~ 2020년 2월까지, 293건의 상수도공사를 시행하고 GIS 시스템에 입력[표2] 하였다.

[표2] 상수도 공사 GIS 시스템 입력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공공측량	소규모 공사				
			소 계	급 수	개보수	누 수	블록정비
계	293	73	220	85	34	56	45
2016년	94	23	71	25	10	21	15
2017년	73	19	54	22	8	15	9
2018년	68	15	53	22	11	8	12
2019년	46	16	30	12	2	10	6
2020년	12	-	12	4	3	2	3

※ 자료: 서부수도사업소 제공자료 재구성

## 1. 공공측량 대상 공사1) 업무추진 부적정

「지침」 IV. 세부 운영사항 3. 상수도 GIS 최신성 유지에 따르면, 공공측량 대상 공사에 대한 공사 시행 시 공공측량에 의해 DB를 구축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측량사업은 본부(급수부)에서 일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본부에서 공공측량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소 공사담당자가 공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20년 공공측량 대상 공사 총 13건[별첨]2)에 대하여 본부의 공공측량사업 착수지연(5월 말 착수 예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측량을 수행할 수 없음에 따라 공사담당자가 관련 지침에 따라 자체 공공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수도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다.

## 2. 소규모 상수도공사 관련, GIS 갱신업무 소홀

「지침」 IV. 세부 운영사항 4. DB 갱신의 일원화에 따르면 상수도 공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배관망도는 GIS 시스템의 도면을 활용하여 표기하고, 공사담당자는 굴착하여 현장 확인된 정보가 GIS와 불일치되는 부분이 확인되면 GIS 담당자에게 수정요청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공공측량 대상이 아닌 소규모(누수, 급수, 개보수, 블록정비 등) 공사담당자는 준공검사일(또는 기성검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수도 시설물 이격거리 지침서」 등을 활용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시공도면, 속성자료 등을 GIS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하여 GIS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GIS 담당자는 누락된 속성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담당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고, 공사담당자는 즉시 보완 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소규모 공사(누수, 급수공사, 개보수, 블록정비 등)를 추진하면서, 「상수도 시설물 이격거리 지침서」 등을 활용한 시공도면, 속성자료 등을 GIS 도면에 정확하게 표기하여 GIS 담당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공상세도와 설계평면도 등이 포함된 공사서류만 제출함에 따라, 우리시 상수도 시설물 정보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GIS 시스템의 최신성 관리와 DB갱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 관경이 50mm 이상, 연장 10m 이상 상수관로 및 부속시설물

2)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본부(급수부)에 공공측량 요청(2020. 3월 ~ 2020. 5월)

## 서부수도사업소 의견

공사 전 관련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을 요청하였으나 본부의 용역계약 및 착수 지연사유로 요청기간 내 측량이 불가하다하여, 사업소 자체측량을 위한 용역비 및 활용예산을 검토하였으나,

상수도관 공공측량 전문회사인 (주)○○○○에서 1km 당 약 800만원을 제시하여 총 사업물량 9km 발주 시 72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시설부대비 등 확보예산이 11백만원에 불가하여 자체 발주를 포기하였고,

공사구간의 정확한 측량성과를 위하여 본부 급수부에 조속한 공공측량을 촉구<sup>3)</sup>한 바 있으며 현재 가포장 상태에서 구간확인이 가능하므로 측량이 완료된 후 2차 포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조치할 사항 급수부장은

(권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급수부에 공공측량 요청한 2020년 대상사업 13건(별첨)에 대하여 급수부의 공공측량 사업 착수시 과업에 포함하여 조사탐사 실시 등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라며, 향후에는 용역계약 및 착수지연 사유로 요청기간 내 공공측량이 불가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시기 조정 및 발주방법 개선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향후 소규모 공사(누수, 급수, 개보수, 블록정비 등)에 대하여 공사업체에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시공지시서와 함께 GIS 도면을 현장소장에게 배부하여, 「상수도 시설물 이격거리 지침서」에 따라 터파기 현장(지하공간 상수도 시설현황)상황을 GIS 도면에 정확하게 표시하여 제출하도록 업체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서부수도사업소-10503 문서시행

별첨

2020년 공공측량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개요	착공일 준공일	공공측량 의뢰		비고 (감독자)
			일자	문서번호	
□□□ 가정동 511-11번지 일원 ◆◆◆◆공사	'86-CIP-∅300-653m → DCIP-∅300-653m	'20.03.23 '20.06.20	03.12	서부수도사업소-5785호	공업주사 ○○○
□□□ 원창동 393-3번지 일원 ◆◆◆◆공사	'95-ASP-∅200-577m → DCIP-∅200-577m	'20.03.24 '20.06.30	03.26	서부수도사업소-6985호	시설서기 ○○○
□□□ 신현동 112-56번지 일원 ◆◆◆◆공사	'89-PFP-∅100-650m → DCIP-∅100-650m	'20.03.27 '20.06.24	04.01	서부수도사업소-7465호	공업주사보 ○○○
□□□ 가정동 499-1번지 일원 ◆◆◆◆공사(가정 동 5-96번지 일원)	'82-CIP-∅300-375m → DCIP-∅300-375m	'20.04.01 '20.06.29	04.01	서부수도사업소-7465호	시설서기 ○○○
□□□ 심곡동 305-1번지 일원 ◆◆◆◆공사	'92-DCIP-∅100-1160m → DCIP-∅100-1160m	'20.04.01 '20.06.29	04.13	서부수도사업소-8463호	시설서기 ○○○
□□□ 연희동 685번지 일원 ◆◆◆◆공사	'92-DCIP-∅150-795m → DCIP-∅150-795m	'20.03.30 '20.06.27	04.13	서부수도사업소-8463호	시설주사 ○○○
□□□ 당하동 895-1번지 일원 ◆◆◆◆공사	'89-DCIP-∅200-1357m → DCIP-∅200-1357m	'20.04.16 '20.07.16	04.13	서부수도사업소-8463호	공업서기 ○○○
□□□ 검암동 609-5번지 일원 ◆◆◆◆공사	'06-DCIP-∅80-500m → DCIP-∅80-500m	'20.04.08 '20.07.06	04.13	서부수도사업소-8463호	공업주사보 ○○○
□□□ 석남동 484-4번지 일원 ◆◆◆◆공사	'84-CIP-∅300-390m → DCIP-∅300-390m	'20.04.20 '20.06.23	04.14	서부수도사업소-8549호	공업주사 ○○○
□□□ 연희동 44-2번지 일원 ◆◆◆◆부설공사	PFP-∅100-140m	'20.04.28 '20.05.29	04.29	서부수도사업소-9823호	시설서기 ○○○
□□□ 가정동 574번지 일원◆◆◆ 교체공사	'81-CIP-∅150-707m → DCIP-∅150-707m	'20.04.20 '20.07.18	05.04	서부수도사업소-9988호	시설서기 ○○○
□□□ 석남동 624번지 일원 ◆◆◆◆공사	'96-PFP-∅80-75m → DCIP-∅80-75m	'20.05.01 '20.06.30	05.04	서부수도사업소-9988호	시설서기 ○○○
□□□ 가좌동 556-1번지 일원 외 1개소 ◆◆◆◆공사(가좌 동 283-7번지 일원)	DCIP-∅100-599m	'20.05.01 '20.06.30	05.04	서부수도사업소-9988호	시설서기 ○○○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공사 통수 전 수질검사 실시 관리소홀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수도법」 제19조(완공 시 수질검사)에는 일반수도사업자가 상수도 공사를 완공하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에서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상수도공사 준공 전 수질검사 업무처리 방안(급수부 - 6092, 2012.7.18.)」에 따르면 노후관 교체공사의 경우 사업소에서 탁도, 잔류염소 등 5개 항목 수질검사 및 상수도관 신·증설(이설)공사는 수질연구소에 의뢰하여 탁도, 잔류염소 등 18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에는 상수도관 신·증설(이설)공사 시 단수가 발생하여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가피하다고 판단 될 경우 사업소에서 5개 항목(냄새, 맛, 탁도, pH, 잔류염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 및 송·배수관 신·증설(이설) 공사 등 상수도 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통수 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1] 상수도공사 준공(통수)전/후 수질검사 현황

(단위 : 건)

구 분	연도			2017			2018			2019			2020년 (1월~4월)		
	대상	실시 (전/후)	미실시	대 상	실시 (전/후)	미실시	대 상	실시 (전/후)	미실시	대 상	실시 (전/후)	미실시	대 상	실시 (전/후)	미실시
계	40	19/14	25)	10	27	1	10	37	11	10/0	1	9	4/0	(공사중)	
●●● 교체공사 (단위공사)	32	14/14	2(2)	10	2/7	1	10	3/7	7	6/0	1	5	3/0	(공사중)	
□□□ 교체공사	8	5/0	(3)	-	-	-	-	-	4	4/0	-	4	1/0	(공사중)	

※ 서부수도사업소 제출자료 참조

[표2] 수질검사장비 보유 및 교육현황

장비명	대수	수질검사장비 교육현황		
		연도	참석인원	교육자
탁도계	8	2016	-	
잔류염소계	4	2017	3	◎◎◎, ○○○, △△△
PH측정기	1	2018	1	○○○
		2019	-	
		2020	-	

그러나, 수도공사 통수 전에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통수를 하여야 함에도 서부수도사업소의 수도공사 통수 전/후 수질검사 현황을 확인결과 2017년부터 2020년 04월까지 총40건의 상수도관 공사를 시행하면서 노후관 교체공사와 불량관 교체공사의 33건을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으며, 노후관교체공사 2건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미실시 하였고(5건 진행중), 14건은 통수 후 수질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상수도공사 준공 전 수질검사 업무처리 방안(급수부 - 6092, 2012.7.18.)」에 따르면 공사 감독자는 수질검사 기록을 수질검사일지 및 수질검사결과 대장 일지 등에 기록 관리하고 공사 실적 등을 보고(급수부, 월보)하여야 함에도 보고 사실이 없으며, 공사 감독자는 수질연구소에서 반기1회 실시하는 수질검사 장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2016. ~ 2020. 4월 기간에 2017년도 3명, 2018년도 1명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공사 관련 수질검사 관리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 노후관(단위공사) 등 수도관 공사 완공 시에는 통수 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수질기준에 적합 시에만 반드시 통수하고, 관련 수질검사일지 및 관리대장 등을 철저히 작성·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검사 장비 및 검사방법에 대한 교육 이수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주의 요 구

제 목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업무 소홀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수도미터 계량기는 수도물 사용량을 확인하여 요금부과를 하기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기기로 검정 유효경과 만료 수도계량기는 계측기로 수명을 다한 것을 의미하므로 발생이전에 교체하여 사용량 점검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기준 업무지침(이하 “지침”）」에 따르면, 제16조(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 ① 검정 유효기간이 경과된 수도미터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 ② 검정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연간 수도미터를 미리 전량 파악하여 1개월전 주기로 교체를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내에 교체가 불가능한 수량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2~3개월 전 교체 주기로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2 ~ 3개월)전 교체 주기로 연간 교체대장을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하여 다음년도에 시행하여야 한다(별지 10호)
- ④ 제2항 규정의 교체 시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하나. 부득이 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별지 11호) 작성·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수도사업소장은 매년 유효기간경과 수도미터 교체계획 대상현황(별지 제7호 서식)을 사전 파악하여 수도미터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매년 7월말까지 수도시설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도시설관리소장은 자료를 취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유효기간경과 수도미터의 교체시에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고장의 경우에는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19조(수도미터의 반납)** ② 수도시설관리소장은 반납(입고)에 따른 수도미터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시험, 분석하여야 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수도미터에 대하여는 기록관리 후 당해지역 수도사업소장에게 분석결과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수도미터의 재사용)** 수도사업소장은 시험 분석결과 사용연수 2년 이내이고, 사용량 1000m<sup>3</sup> 미만이며, 외관 상태가 양호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수도미터에 대하여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가급적 신상품보다 우선 사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표1]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 미교체 현황(2020. 3월 현재)

구경(mm)	단위	수량	관리카드 (유/무)	사유
계		123		
15	개	90	무	개선
20	개	10	"	개선
25	개	8	"	개선
32	개	8	"	개선
40	개	7	"	개선

[표2] 재사용 수도미터 현황(2019.12월)

구분	구경(mm)	단위	수량	용도	미사용(설치)
계			21		11
재 사용 수도미터	15	개	10	교체용	3
	20	개	7	교체용	5
	25	개	1	교체용	1
	32	개	2	교체용	1
	40	개	1	교체용	1

※ 서부수도사업소 제출자료 참조

그러나, 지침 제1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 교체 불가시에는 관리대장을(별지 11호)작성·관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제20조 규정의 수도미터의 재사용을 위하여 효율적 집행에 노력하여야 함에도 서부수도사업소의 2020. 3월 현재 유효기간 경과 수도미터 미교체 현황(표1)과 재사용 수도미터 현황(2019.12월, 표2)을 보면 수도미터의 설치 및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도미터 설치 및 관리기준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유효기간경과 수도미터 교체 및 재사용 수도미터의 효율적 집행에 철저히 기하고, 수도미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 1. 민원처리부 기록·관리 소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에 따르면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은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하며, 일반민원 중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기타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르면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 기타 민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조(민원의 접수)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민원의 접수)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하되,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민원의 접수)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정하고 있는 민원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민원문서의 표시)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 부분에 시행규칙 [별표 1]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민원문서 표시인을 전자적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법 제27조(처리결과에의 통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처리결과에의 통지방법 등)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의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매달 5일까지 지난 달의 민원처리상황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민원심사관의 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독촉장) 규정에 의거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확인·점검하여 처리기간이 지난 민원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주무부서의 장(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의 장인 경우에는 관계 직원을 말한다)에게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민원처리 규정」 제4조(민원의 접수·이송)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되,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른 소방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은 소방본부에서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은 각 소속기관의 문서담당부서에서 각각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6조(심사관) 규정에는 민원심사관은 소속기관별 문서담당부서의 장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 문서담당부서인 고객지원팀에서는 서식, 문서, 전화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 민원 처리부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접수하고, 처리기간 도래 전 수시 확인·점검을 통해 지연 또는 부적절하게 처리된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또한, 민원서류를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고 처리부서에서 일반문서 등으로 접수하여 민원처리기한, 처리결과 통지 등 민원처리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는 2020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민원 처리부(전자민원 서버 이용 포함)에 단 1건의 민원도 접수하지 아니한 채 처리부서(팀)별로 민원을 접수·관리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문서담당부서인 고객지원팀에서는 민원 처리부에 민원을 접수하여야 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17년~2020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문서, 서면, 전화 등으로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각 팀별로 접수·처리한 일부 민원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7년~2020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면, 전화, 문서 등으로 각 팀에서 접수·처리한 [표1]의 민원 36건 중 11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4건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을 7~29일을 경과하여 통보하는 등 접수된 민원 관리업무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1】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번	접수 일	신청 방법	민원 유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 기한	처리결과			비고
				성명	주소			처리 일	조치내용	처리 결과 통 방 법	
1	17-01-09	서면	일반 민원	○○○	인천 남동구 ●●대로 000	압류 이의제기	7	17-01-10	채납 납부안내	문서	
2	17-04-10	이송	기타 민원		인천광역시 서구 ●●로 000	●●동 000-000번지의 사유지 내 지상식소화전◇ ◇000호의 이설요청	7	17-04-11	소방안전본 부와 상수도사업 본부 간 소방용수시 설의 관리협약서 와 함께 해당민원 재이송	문서	
3	17-07-03	서면	일반 민원	○○○	인천 서구 ●●대로 000-00	요금과다	7	17-08-08	요금재조정	문서	처리 기간 경과
4	17-07-14	이송	고충 민원		인천광역시 서구 ●●동 000-0	상수도관이 민원인 하수도관을 관통한것에 따른 상수도 이설 및 개인하수도복구 요청	7	17-07-14	폐관 가능성이 있어 7.18 확인터파기 예정안내 관통한 수도관이 폐관일경우 바로절단후 복구작업이 가능하나 신관일경우 단수작업 필요하여 개보수공사 (연간단가)로 시공지시 계획 안내	-	
5	17-07-25	이송	기타 민원	○○○		●●동 000-0 인근 도로의 상수도 맨홀 주변구조물 파손으로 인한 차량통행시 소음발생 및 뚜껑이탈우려	7	-		-	처리 결과 이동 보
6	17-07-19	전화	고충 민원	○○○	인천 서구 ●●동 000-00	단지내아스콘 포장공사 후 지면상승에 따라 우천시 세대별계량기 침수되어 겨울철 동파 우려로 위치변경 요청	7	17-07-19	내선누수 및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위치변경에 어려움을 알리고 대안으로 보호통을 인상하여 침수를 예방하도록 권유	구두	
7	17-07-24	이송	기타 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동 000-0	불출수	7	-		-	처리 결과 이동 보
8	17-	이송	고충	○○○	인천 서구	수압으로 인한	7	-		-	처리

	08-01		민원		●●동 000-0	계량기 파손 발생					결과 이통 보
9	17-08-24		고충 민원	삼곡동 000 ○○○	인천 서구 ●●동 000-0	2015년 3월 시행한 공사로 인해 1년후인 2016년 4월 내선누수 발생주장 및 피해보상요구	7	17-08-24	당시 개보수공사 시공업체에 작업내용과 관련서류 제출요청	문서	
10	17-08-24		기타 민원		인천 서구 ●●동 000-00	노후관 교체공사 후 소출수	7	17-08-24	당시 노후관 교체 공사 시공업체에 작업내용 확인 요청 및 조치 후 하자보수 완료보고서 제출 요청	문서	
11	17-12-23	이송	기타 민원	○○○		●●1동 동사무소 앞 수도계량기 맨홀틈에발이걸 려넘어진후 안전관련조치요 청	7	2017-12-29	12월27일 유선 동화 후 현장 확인 및 계량기보호 등 교체완료안 내	문서	
12	18-01-11	이송	기타 민원			●●동 산000-0 굴착 구간 침하에 따른 보수요청	7	-		-	처리과 이통 보
13	18-01-05	이송	기타 민원	○○○	인천 서구 ●●로 00	가정로 000 부근 맨홀 정비요청	7	-		-	처리과 이통 보
14	18-01-15	서면	일반 민원	○○○	인천 서구 ●●대로 000	요금과다	7	18-02-21	요금재조정	문서	처리 기간 경과
15	18-01-15	이송	기타 민원			석남동 000-00 일원 도로굴착공사 이후 도로부속시설물 원상복구요청	7	-		-	처리과 이통 보
16			고충 민원			석남동 000-00 ◆◆빌라 0/ 000 수도미터오시공 에따른 0동 주수도미터 수도요금 이중부과의심	7	18-01-19	19일 현장 확인 후 개보수업체 시공지시를 통해000호수 도미터의분 기지점 확인후 인입관채매 설계획및이 중부과여부 확인후환부 수도요금을 산정하여주 수도미터 수용가측에 환부예정	구두	
17	19-03-21		기타 민원			●●동 000-0 부근 상수도 철개파손에 따른 복구요청	7	19-03-21	현장확인 후 안전조치 시행 및 상수도 전용철개로 교체공사 예정안내	구두	

18	19-03-28		기타 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동 000	소출수	7	19-03-28	현장 확인 후 분기점 위치 굴착하여 새들분수전 확인 및 후속 조치 예정	-	처리과 통보
19							7	19-04-08	2018년 0월 신축 후 미임대 공장 의 수도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 증가와 관련하여 요점강면의 부적정성을 위해 민원 안내를 수차례 10일간 시도 하였으나 일체 협의에 응하지 않는바 요금을 정상 부과하고 종결 처리	전화, 메일, 문자 메시지	
20	19-04-26	이송	기타 민원	○○○	●●동 000-0 맨홀 주변 도로 파손 복구 계획 안내 요청		7	19-04-29 19-05-14	수도시설 관리 소가 관리 중인 이토변철개 침하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리고 민원인에게 복구 계획 안내 요청	문서	
21	19-04-30	서면	일반 민원	○○○	인천 서구 ●●로 00	요금과다	7	19-05-15	기간만료 불가	-	처리기간 경과
22	19-06-02	이송			●●로 000번길 부근 맨홀 침하		7	-		-	처리과 통보
23	19-06-10	이송	기타 민원		●●중학교, ●●중학교, ●●유치원, ●●유치원 수질검사 및 필터 교체비용		7	19-06-25	보상 예정 안내 및 수질검사 완료	문서	처리기간 경과
24	19-06-19	이송	기타 민원	○○○		수질검사 재검사 요청	7	19-06-25	수질검사 완료	문서	
25	19-06-15		질의 민원	○○○	인천광역시 서구 ●●동 000-0	수돗물 내 유충 확인 및 원인 파악 요청	7	19-06-15 19-06-24	급수부 이관 정밀수질검사 요청 발생지점 2곳 방문 후 수질분석 결과 안내 및 상담 완료, 25일 방문 예정이던 1곳은 민원인 이방문 상담을 원치 않	구두, 문서	

									아분석결과 에대한 공문발송		
26	19-06-21	이송	기타 민원			●●로000번길 과 열우물로가 교차하는 사거리의 침하도로 보수요청	7	-		-	처리과 미통 보
27	19-08-27	이송	질의 민원	○○○		●●동 000-0 ●●빌딩 앞 소화전방류예정 시간,원인및 소화전방류기록 지요청	7	19-08-28	소화전 방류 사유 등에 관하여 민원인과 통화 처리 (시민봉사와 결과 통보)	전화	
28	19-08-29	이송	기타 민원	○○○ 힐스테 이트 0차		수돗물 상태 점검 요청	7	-		-	
29	19-10-29	서면	기타 민원	가좌 ○○○		저수조 청소비 환불	7	19-10-29	급수부 이관	-	
30	19-11-08	서면	일반 민원	○○○	경기 ●●시 000	요금청구부당	7	19-11-14	채납납부 안내	-	
31	19-11-15	이송	기타 민원			●●동 000-0 제수변청하 및 응기로 인한통행불편	7	19-11-27	보도블럭 침하로 서구청 반송	문서	
32	19-12-31	서면	고충 민원	○○○ 아파트		저수조 청소비용 요청	7	19-12-31	상수도사업 본부에서 공촌수계 수질사고 정상화이후 발생한사항 이며, 직접적인 비용지원 어려움을 안내	문서	
33	20-01-28	서면	질의 민원	○○○		●● 2단지 수질분석 결과에 대한 응용가능 여부 문의관련 협조 요청	7	-		-	처리과 미통 보
34	20-04-01		기타 민원	○○○ 아파트 관리 사무소		청라 ●●아파트	7	20-04-02	수질연구소 수질검사 의뢰	문서	
35	20-04-02		기타 민원			●●동 000-00 건물 벽체에 지속적누수발생 에따른상수도 관이설요청	7	-		-	처리과 미통 보
36	20-05-06	이송	고충 민원	○○○ 아파트 발전 위원회		●● 특별회계를 통한 맑은물공급시스 템설치요청	7	20-05-08	●● 특별회계와 우리 사업소가 관련없음을 안내하고서 구청에반송	문서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 2. 민원 종결 처리 부적정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9. 3. 21 접수된 [표2]의 ‘2018년 신축 후 ●●● ◇ ◇의 수도계량기 교체 후 사용량 증가 민원’에 대해 2019. 4. 8 민원인이 요금감면 (30%) 적정성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민원을 종결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2】 종결처리 민원 현황

접수일	신청방법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민원처리부 등록여부	민원인 처리결과 통지여부	비고
				처리일	조치 내용	종결사유			
19-03-21	전화	◇◇◇	수도요금 과다	19-04-08	종결	요금감면 미협의	×	×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는 위 민원에 대해 2019. 3. 25 수도요금 과다의 원인이 계량기 교체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공장 내부 화장실 변기 노즐 파손 등을 미루어 보아 민원인의 관리부족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계량기 교체 후 기간제 근로자가 직접 수용가에 교체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점, 실제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점, 기타 누수원인이 직접 수도 사용량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수도요금 일부 감면(30%)을 내부적으로 검토·결정<sup>1)</sup>하여 2019. 4. 1 민원인에게 수도요금 감면 관련 확인서<sup>2)</sup> 제출을 메일로 요구하였고 민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다.

법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1) 2019. 3. 23일 민원 현장 확인 후 2019. 3. 25 출장복명으로 민원처리에 관해 내부 검토함.

2)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내용으로 민원인에게 확인서 제출을 요구함.

- ●●동 00-000번지 ◇◇◇ ◇◇◇ 공장의 수도계량기 교체 후 3월 수도 사용량 증가에 따른 민원 제기 부분에 대하여 수도사용량 30%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법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표2]의 민원의 대해 먼저 민원처리부에 접수·등록 후 처리결과를 구체절차를 포함하여 문서로 안내했어야 했고, 민원인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민원 종결처리 사유인 반복 및 중복민원이 아님에도 민원인이 요금감면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민원을 종결 처리하였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요금감면 신청 시 구비서류가 아닌 요금 감면 확인서를 부당하게 제출 요구한 사실도 있다.

####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당직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서부수도사업소의 2018년부터 2020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당직근무 편성 및 운영 기준은 [표1]과 같으며, 명령순번을 정하여 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표1】 서부수도사업소 당직근무 편성 및 운영 기준**

구분	편성기준	
	일직	숙직
2018년	○ 편성인원 : 2명 - 2018년 9월부터 1명으로 변경 ○ 편성대상 : 남, 여직원 (평균인원 28명)	○ 편성인원 : 1명 ○ 편성대상 : 남직원 (평균인원 20명)
2018년 9월 ~ 감사일 현재	○ 편성인원 : 1명 ○ 편성대상 : 여직원 (평균인원 10명)	○ 편성인원 : 1명 ○ 편성대상 : 남직원 (평균인원 17명)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위 기준 및 당직명령부에 따른 서부수도사업소 직원의 연평균 당직근무 횟수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서부수도사업소 연평균 당직근무 횟수**

구분	연평균 당직근무 횟수	
	남자직원	여자직원
2018년	○ 일·숙직 : 16회~18회	○ 일직 : 8회~10회
2018년 9월 ~ 감사일 현재	○ 숙직 : 12회~15회	○ 일직 : 8회 ~ 10회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인천광역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에 따르면 당직명령자(인천광역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직명령권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는 당직근무 예정일 14일 전까지 대상자의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명령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직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출장·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교체근무자를 정하여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칙 제19조(당직근무자의 휴무)에 따르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정상근무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종일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명확한 기준에 따라 당직명령을 통지하고 당직근무 변경 신청에 대해 출장,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승인을 했어야 했다. 이는 2016년 서부수도사업소 종합감사에서 기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서부수도사업소 2018년, 2019년 당직근무 편성 및 운영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의 경우 2018년 연 34회, 지방기계운영주사보 □□□의 경우 2018년 연 42회, 2019년 연 44회, 지방시설서기 □□□의 경우 2018년, 2019년 각각 연 30회의 당직근무를 명령(변경승인)한 사실이 있어 여전히 일부직원의 경우 과다하게 당직근무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3】 당직근무 변경승인 현황

대상자		연도	당직명령현황							당직후 대체휴무
직급	성명		총계	명령			변경승인			
				소계	일직	숙직	소계	일직	숙직	
지방사무운영 주사보	□□□	2018	34	16	-	16	18	5	13	34일
지방기계운영 주사보	□□□	2018	42	18	5	13	24	9	15	41일
		2019	44	15	-	15	29	20	9	39일
지방시설서기	□□□	2018	30	13	2	11	17	-	17	30일
		2019	30	16	-	16	14	1	13	29일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현황 [별지] 참조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당직근무 후 대체휴무 현황

<2018년>

직급	성명	당직근무현황		대체휴무일	비고
		당직일	구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	2018-01-04	숙직	2018-01-05	
		2018-01-12	숙직	2018-01-16	
		2018-01-21	숙직	2018-01-22	
		2018-01-21	일직	2018-01-24	
		2018-02-06	숙직	2018-02-07	
		2018-02-13	숙직	2018-02-14	
		2018-02-20	숙직	2018-02-21	
		2018-03-05	숙직	2018-03-06	
		2018-03-13	숙직	2018-03-14	
		2018-03-23	숙직	2018-03-26	
		2018-03-24	일직	2018-03-28	
		2018-04-08	숙직	2018-04-09	
		2018-04-08	일직	2018-04-11	
		2018-04-17	숙직	2018-04-18	
		2018-04-25	숙직	2018-04-26	
		2018-05-19	숙직	2018-05-21	
		2018-05-22	일직	2018-05-23	
		2018-05-26	일직	2018-05-28	
		2018-05-26	숙직	2018-05-30	
		2018-06-10	숙직	2018-06-11	
		2018-06-10	일직	2018-06-12	
		2018-06-18	숙직	2018-06-19	
		2018-06-26	숙직	2018-06-27	
		2018-07-12	숙직	2018-07-13	
		2018-07-28	일직	2018-08-03	
		2018-08-04	일직	2018-08-06	
		2018-08-05	일직	2018-08-08	
		2018-08-26	숙직	2018-08-27	
		2018-08-30	숙직	2018-08-31	
		2018-09-12	숙직	2018-09-13	
		2018-09-22	일직	2018-10-01	
		2018-09-30	일직	2018-10-02	
2018-10-17	숙직	2018-10-18			
2018-11-03	일직	2018-11-05			
2018-11-03	숙직	2018-11-06			
2018-11-11	일직	2018-11-13			
2018-11-20	숙직	2018-11-21			
2018-12-07	일직	2018-12-10			

직급	성명	당직근무현황		대체휴무일	비고
		당직일	구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	2018-12-09	일직	2018-12-12	
		2018-12-15	일직	2018-12-18	
		2018-12-15	숙직	2018-12-19	
지방시설서기	○○○	2018-01-07	일직	2018-01-11	
		2018-02-15	일직	2018-02-23	
		2018-03-04	숙직	2018-03-05	
		2018-03-02	숙직	2018-03-08	
		2018-03-29	숙직	2018-04-06	
		2018-04-15	숙직	2018-04-16	
		2018-04-18	숙직	2018-04-19	
		2018-04-21	숙직	2018-04-26	
		2018-05-02	숙직	2018-05-03	
		2018-05-18	숙직	2018-05-25	
		2018-05-21	숙직	2018-05-28	
		2018-06-04	숙직	2018-06-05	
		2018-06-02	숙직	2018-06-08	
		2018-06-11	숙직	2018-06-12	
		2018-06-21	숙직	2018-06-22	
		2018-07-03	숙직	2018-07-04	
		2018-07-07	숙직	2018-07-13	
		2018-07-13	숙직	2018-07-18	
		2018-07-19	숙직	2018-07-20	
		2018-08-12	숙직	2018-08-13	
		2018-08-19	숙직	2018-08-20	
		2018-08-22	숙직	2018-08-23	
		2018-09-02	숙직	2018-09-03	
		2018-09-21	숙직	2018-09-28	
		2018-10-08	숙직	2018-10-15	
		2018-10-21	숙직	2018-10-22	
2018-10-24	숙직	2018-10-25			
2018-11-11	숙직	2018-11-12			
2018-11-28	숙직	2018-11-29			
2018-12-15	숙직	2018-12-21			

※ 지방사무운영주사보 ○○○의 경우 퇴직자로 대체휴무 현황 미작성

<2019년>

직급	성명	당직근무현황		대체휴무일	비고
		당직일	구분		
지방기계운영주사보	□□□	2019-01-01	일직	2019-01-03	
		2019-01-11	숙직	2019-01-14	
		2019-01-13	일직	2019-01-15	
		2019-01-29	숙직	2019-01-30	
		2019-02-05	일직	2019-02-07	
		2019-02-06	일직	2019-02-08	
		2019-02-15	숙직	2019-02-18	
		2019-02-21	숙직	2019-02-22	
		2019-03-03	일직	2019-03-05	
		2019-03-10	일직	2019-03-11	
		2019-03-15	숙직	2019-03-18	
		2019-03-17	일직	2019-03-21	
		2019-04-06	일직	2019-04-08	
		2019-04-14	숙직	2019-04-15	
		2019-04-20	일직	2019-04-22	
		2019-05-02	숙직	2019-05-03	
		2019-05-06	일직	2019-05-07	
		2019-05-11	일직	2019-05-13	
		2019-05-19	숙직	2019-05-20	
		2019-06-04	숙직	2019-06-05	
		2019-06-14	숙직	2019-06-18	
		2019-06-22	숙직	2019-06-24	
		2019-07-08	숙직	2019-07-09	
		2019-07-20	일직	2019-07-22	
		2019-07-26	숙직	2019-07-29	
		2019-08-09	숙직	2019-08-12	
		2019-08-15	숙직	2019-08-16	
		2019-08-21	숙직	2019-08-22	
		2019-08-27	숙직	2019-08-28	
		2019-09-09	숙직	2019-09-10	
		2019-09-13	일직	2019-09-18	
		2019-09-21	일직	2019-09-24	
		2019-09-28	숙직	2019-10-01	
2019-10-08	숙직	2019-10-11			
2019-10-19	일직	2019-10-21			
2019-11-04	숙직	2019-11-05			
2019-11-23	숙직	2019-11-26			
2019-11-30	일직	2019-12-02			
2019-12-08	일직	2019-12-09			
2019-12-12	숙직	2019-12-13			

직급	성명	당직근무현황		대체휴무일	비고
		당직일	구분		
지방시설서기	○○○	2019-01-01	숙직	2019-01-02	
		2019-01-15	숙직	2019-01-16	
		2019-01-12	일직	2019-01-18	
		2019-02-07	숙직	2019-02-08	
		2019-02-05	숙직	2019-02-12	
		2019-02-19	숙직	2019-02-20	
		2019-02-22	숙직	2019-03-04	
		2019-03-14	숙직	2019-03-15	
		2019-03-27	숙직	2019-03-28	
		2019-04-01	숙직	2019-04-02	
		2019-04-19	숙직	2019-04-25	
		2019-05-07	숙직	2019-05-08	
		2019-05-03	숙직	2019-05-10	
		2019-06-10	숙직	2019-06-11	
		2019-07-14	숙직	2019-07-15	
		2019-07-25	숙직	2019-07-26	
		2019-07-31	숙직	2019-08-01	
		2019-08-08	숙직	2019-08-09	
		2019-08-16	숙직	2019-08-23	
		2019-08-26	숙직	2019-08-27	
		2019-09-14	숙직	2019-09-20	
		2019-09-23	숙직	2019-09-24	
		2019-09-28	일직	2019-10-02	
		2019-10-03	숙직	2019-10-04	
		2019-10-15	숙직	2019-10-16	
		2019-10-27	숙직	2019-10-28	
		2019-11-09	숙직	2019-11-15	
		2019-11-21	숙직	2019-11-22	
2019-12-17	숙직	2019-12-18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시정 · 주의 요구

제 목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6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인사혁신처 예규”라 한다)」 제8장 휴가 2. 휴가의 개념에는 각각의 휴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 연가 :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2. 병가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받는 휴가
3. 공가 : 공무원이 일반국민의 자격으로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거나 법령상 의무의 이행이 필요한 경우에 부여받는 휴가
4. 특별휴가 :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경조사 등)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

### 1. 연가일수 초과 사용

공무원은 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21일까지 연가일수<sup>1)</sup>를 받을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 예규

---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제8장 휴가 3. 휴가제도의 운영 다. 휴가일수의 계산에 따르면 법정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번 감사기간 동안 2017년~2019년 서부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 현황을 살펴본 결과 [표1]과 같이 총 1명의 직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연가일수 초과 연가 사용 현황**

연도	대상자		부여일수	연가사용현황				초가사용
	직급	성명		계	연가	조퇴	지참	
2018	기계운영 주사보	○○○	21일	21일 6시간	18일 4시간	1일 2시간	2일	6시간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이에 대해 서부수도사업소 기계운영주사보 ○○○은 2018년 연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잔여일수를 잘못 계산하여 연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우리 시는 [그림1]과 같이 행정정보시스템인 업무정책포털 메인 화면 ‘QUICK MENU 근무상황부’를 통해 개인별 휴가일수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별 휴가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스스로 본인의 휴가 상황을 수시로 관리하여야 함은 물론,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들이 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 소속 공무원이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신청한 경우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연가를 사용 신청한 [표1]의 공무원에 대해 연가를 승인하여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6년 이상 : 21일

【그림 1】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정책포털 근무상황부 조회 화면

The screenshot shows the Incheon City Work Policy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various icons and a search bar.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온라인보고' (Online Report), '온-나라' (On-Nara), '메일' (Mail), '정책관리' (Policy Management), '업무활동' (Work Activity), '게시판' (Bulletin Board), '업무편의' (Work Convenience), '춘 TALK' (Spring Talk), '대시보드' (Dashboard), '행정업무' (Administrative Work), and '연계업무' (Linked Work). A 'QUICK MENU'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in the top right corner. Below the main content, there are sections for '신규알림(0건)' (New Alerts), '나의 일정' (My Schedule), and '오늘의 식단' (Today's Menu). At the bottom, a table displays work status data for the year 2020.

연기일수	연가이산	휴가일수(시간분)							기타(일수/시간분)				총 사용(일수/시간분)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대체휴무	순번휴무	조퇴	외출	지참	결근		
21	1	2/0:00	0/0:00	0/0:00	0/0:00	3/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2/0:00
		휴가	결근	지참	외출	조퇴	출장						

※ 표시: 입부상속보름

## 2. 건강검진 공가사용 부적정

규정 7조의6(공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지방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참고자료」(행정안전부, 2019년 3월)에 따르면 규정 제7조의6 제5호의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 허가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들이 허가 받은 공가일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공가를 허가함에 있어 규정 제7조의2에서 정한 공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함에도 [표2]와 같이 건강검진이 아닌 다른 사유로 공가를 부당하게 허가하여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지방행정주사 ○○○은 건강검진 당일 공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후 공가를 사용한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 19. 5. 30 공촌수계 수질사고 이후 계속된 비상근무로 원활한 연가사용 및 하계휴가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휴가는 사용목적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공무원은 사용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해야 함은 물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목적에 맞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표2】 공가 부당사용 현황**

연도	대상자		공가사용현황		건강검진일	비고
	직급	성명	사 용 일	사용목적		
2019	지방행정주사	○○○	19-12-23	건강검진	19-12-18	공가사유 미해당 사용 (반납액 : 116,500원)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시정) 2019년 공가 부당 사용자 행정6급 ○○○에 대해 2019년 연가보상비 지급분 중 1일에 해당하는 금액 116,500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 1. 공사계약 하자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1. 공사명 및 계약금액 2. 계약상대자 3. 준공연월일 4.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할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해당 계약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상·하반기 년 2회 정기하자검사 및 월 1회 만료 전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하였고, 2016. 10월 ~ 2020. 5월 감사일 현재까지 서부수도사업소 하자검사 실시현황은 [표1]과 같다.

**【표 1】 하자검사 실시 현황**

(단위:건)

계 약 명	정기하자검사							만료전 하자검사
	2016	2017		2018		2019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2013년 서구1구역 ◎◎◎ 5회 기성 등 480건	290	315	257	264	218	202	162	29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세부현황 [별지] 참조

그러나, 금번 감사기간 동안 서부수도사업소의 공사계약 건에 대한 하자 검사 실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하자담보기간동안 년 2회 이상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정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함에도 [표2]와 같이 ‘2016년 서구1구역 ◎◎◎◎◎공사 9회 기성’ 등 64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16년 하반기 ‘2013년도 서구3구역 ◎◎◎◎공사 3회 기성’ 등 5건, 2017년 상반기 ‘2014년도 서구2구역 ◎◎공사 1회 기성’ 등 40건, 2017년 하반기 ‘2014년도 서구1구역 ◎◎◎◎◎공사 7회 기성’ 등 5건, 2018년 상반기 ‘2015년 서구2구역 ◎◎◎◎공사(신설) 3회 기성’ 등 8건, 2018년 하반기 ‘2015년도 서구1구역 ◎◎◎공사 11회 기성’ 등 6건, 2019년 상반기 ‘2016년도 서구1구역 ◎◎◎◎공사 2회 기성’ 등 15건, 2019년 하반기 ‘검암동 660-4번지 일원 ◎◎◎◎교체공사’ 등 3건 총 74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담보기간 만료 후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정기하자검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2】 정기 하자검사 미 실시 등 현황**

(단위:건)

계 약 명	정기하자검사							비고
	2016	2017		2018		2019		
2016년 서구1구역 ○○○○○○공사 9회 기성 등 64건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7	21	8	6	19	3	0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세부현황 [별지] 참조

특히, 만료전 하자검사의 경우 반드시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기간 중 별도로 실시하여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했어야 함에도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만료전 하자검사 대상건수 327건 중 ① ‘2015년도 서구1구역 ○○공사 2회 기성’ 등 37건의 경우 만료전 하자검사를 미 실시하였고 ② ‘2013년 서구3구역 ○○○공사 3회 기성’ 등 102건의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일~102일 초과하여 검사하여 하자발생 시 조치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③ ‘2013년 서구3구역 ○○공사 4회 기성’ 등 24건의 경우에는 만료전 하자검사 기간 도래 전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표3]와 같이 총 163건의 공사에 대해 만료 전 하자검사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표 3】 만료전 하자검사 미 실시 현황**

(단위:건)

계 약 명	대상 건수	실시 건수	미 실시 건수			미도래
			자연실시	기간도래전 실시	미실시	
2013년 서구1구역 ●○공사 5회 기성 등 480건	327	164	102	24	37	153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세부현황 [별지] 참조

## 2. 물품계약 하자검사 미 실시

「지방계약법」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2017~2019년까지 도급계약 체결한 물품 계약 중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정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자보증서를 받은 [표4]의 '○○무인가압장 모터펌프 제작 구매' 등 8건의 계약 건에 대해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 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4】 물품계약 하자검사 미실시 현황**

연번	건명	계약금액	계약현황		하자보증기간		하자검사 실시 현황	
			계약일	납품일 (준공일)	개시일	만료일	정기 하자 검사	만료전 하자 검사
1	○○무인가압장 모터펌프 제작 구매	23,320	17- 06-23	17- 07-23	17- 07-21	19- 07-20	미실시	미실시
2	○○○, ○○가압장 조작반 제작 교체	62,000	17- 02-07	17- 02-07	17- 05-25	19- 05-24	미실시	미실시
3	○○○ 외 9개소 수압전송시스템 건축공사(관급자재) 구입 시행	49,070	17- 02-28	17- 02-28	17- 05-18	19- 05-17	미실시	미실시
4	○○○○ 외 7개소 수압전송시스템 건축공사 관급자재(산업제어소프트웨어) 구입 시행	31,127	18- 03-28	18- 03-28	18- 04-17	19- 04-06	미실시	미실시
5	○○○ 외 7개소 수압전송시스템 건축공사 관급자재(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입 시행	39,468	18- 03-28	18- 03-28	18- 04-23	20- 04-22	미실시	미실시
6	○○○○○○ 10개소 수압전송시스템 건축공사(관급자재)구입 시행	38,909	18- 10-10	18- 10-10	18- 10-30	19- 10-29	미실시	미실시
7	○○○○○○○ 10개소 수압전송 시스템 건축공사(관급자재) 구입 시행	49,335	18- 10-10	18- 10-10	18- 11-08	20- 11-07	미실시	미도래
8	당하동 고지대 ○○○ 신설 감시제어시스템 제작 구매	34,846	19- 04-05	19- 04-05	19- 06-19	21- 06-18	미실시	미도래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0]

#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에 관한 사항

기 관 명 서부수도사업소

내 용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에 따라 건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따르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81조(시정명령 등)제3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제3호에 따르면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sup>1)</sup>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9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7]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이에 따라 서부수도사업소에서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인 KISKON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통보기한 준수 여부 및 통보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법령위반 여부가 발견되거나 건설공사대장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및 미통보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의 등록관청(종합건설업자 : 시·도, 전문건설업자 :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요구<sup>2)</sup>했어야 했다.

그러나, 서부수도사업소에는 2017년~2019년 발주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 중 공사완료일 이후까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을 미통보한 4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2020. 5월 감사일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1】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미통보 현황**

연번	계약명	계약현황		계약금액 (천원)	도급자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통보 현황		행정처분 요구사항	
		계약일	준공일		업체명	대표자	통보 여부	통보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1	△△△△△ 왕길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7- 03-14	17- 04-24	169,538	□□□□ 주식회사	○○○	○	17- 04-28	×	×
2	2018년 서구1구역 △△△공사(연간계약)	17-1 2-27	18- 11-16	174,267	□□□□ 주식회사	○○○	×		×	×
3	2019년 서구2구역 △△△△△공사 (장기계속계약)	19- 02-25	19- 12-20	243,069	□□□□ 건설 주식회사	○○○	×		×	×
4	△△△,△△△ 가좌동 일원 노후관교체공사	19- 03-22	19- 06-03	116,782	주식회사 □□□건설	○○○	×		×	×

※ 감사자료 재구성(출처: 서부수도사업소)

**조치할 사항 서부수도사업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권한의 위임 등)제1항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시정명령·지시 및 과태료 부과·징수 시·도지사에게 위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재위임